

2025. 6. 21. 시행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기출해설 특강

25년 6월 21일(토) 법원직 · 등기직 시험 해설 강의 일정

- 강의실 : 씨밋 303호 -

과목(교수님)	일 정	강의실
민법(이준현)	6/23(월) 14:00~16:00	씨밋 303호
형사소송법(이준현)	6/23(월) 16:00~18:00	씨밋 303호
국어(신동수)	6/24(화) 09:00~11:00	씨밋 303호
영어(이아람)	6/24(화) 11:00~13:00	씨밋 303호
민소법(이영민)	6/24(화) 14:00~16:00	씨밋 303호
한국사(정우교)	6/26(목) 09:00~11:00	씨밋 303호
헌법(정인홍)	6/26(목) 11:00~13:00	씨밋 303호
김기찬(등기법)	6/26(목) 14:00~16:00	씨밋 303호
상법(이상수)	6/26(목) 16:00~18:00	씨밋 303호
형법(박지용)	6/26(목) 19:00~21:00	씨밋 303호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 이준현 채움팀

채움 면접특강

예비 면접특강	7월 7일(월), 7월 9일(수) 예비 면접특강 -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본 면접특강	7/14(월) 인성검사 대비 테스트 7/16(수) 자기기술서 작성 및 개별 면접 진행 시작
강의 대상	법원직 · 등기직 필기합격자!!
강의 장소	박문과 씨밋타워 303호(강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강의 수강료	10만원 (교재비 포함)
강의 내용	① 29년의 노하우, 법원 · 등기직 면접에 맞춘 맞춤 면접 ② 실제 면접질문 내용을 토대로 한 개별면접 교육 ③ 스터디 그룹 편성, 조별 면접 교육 ④ 인성검사 대비 테스트

합격예측 풀서비스

일정	6월 21일(토) 18시 이후(가답안 발표 후)
대상	법원직 · 등기직 필기시험 응시자
홈페이지 URL	박문과 법원검찰 https://www.pmg.co.kr/user/pao/event/event_250519.asp
* 수험생 본인 개별 성적 확인, 성적분석 통계 데이터 제공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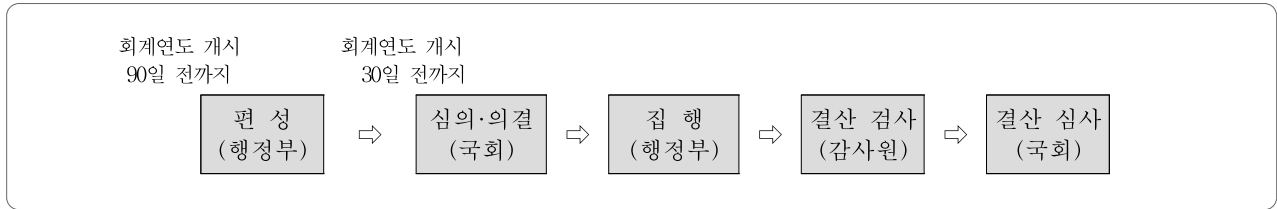
헌 법

정인홍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국회의 정족수

10인 이상	· 회의의 비공개발의(국회법 제75조 제1항) · 일반의안의 발의(국회법 제79조 제1항)
20인 이상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국회법 제121조 제1항) · 징계요구(국회법 제156조 제3항) · 긴급현안질문요구(국회법 제122조의 3) · 의사일정의 변경발의(국회법 제77조) · 교섭단체의 성립(국회법 제33조)
30인 이상	· 자격심사의 청구(국회법 제138조) · 일반의안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본회의 부의(국회법 제87조 제1항)
50인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회법 제95조 제1항 단서)
재적과반수, 최고득표자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헌법 제67조 제2항), 의장 · 부의장결선투표,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적1/5 이상	· 위원회의 개회(국회법 제54조) · 본회의 개의(국회법 제73조)
재적1/4 이상	· 임시회 소집요구(헌법 제47조 제1항) · 전원위원회 요구(국회법 제63조의 2) · 위원회의 개회 요구(재적위원의 1/4 이상) (국회법 제52조) · 휴회 중의 본회의 재개요구(국회법 제8조 제2항) ·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국회법 제28조) · 국정조사 발의(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재적1/3 이상	· 해임건의 발의(헌법 제63조 제2항) · 일반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 무제한 토론의 실시(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출석 과반수	· 비공개 회의 의결(헌법 제50조 제1항)
재적 과반수	· 의장 · 부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제1항) · 해임건의(헌법 제63조 제2항) · 계엄해제 요구(헌법 제77조 제5항) ·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 · 일반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적 결의(헌법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2/3이상	· 법률안재의결(헌법 제53조 제4항) · 번안(국회법 제91조 제1항 제2항)
재적2/3 이상	· 제명(헌법 제64조 제3항) · 자격심사(무자격결정)(국회법 제142조 제3항) · 헌법개정안 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재적3/5 이상	· 무제한 토론의 종결(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2. 예산과 결산 절차



3. 국가기관의 임기 비교정리

(1) 국회

- ① 국회의원 : 4년
- ② 국회의장, 부의장 : 2년
- ③ 상임위원 : 2년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 : 1년

(2) 행정부

- ① 대통령 : 5년(중임 불가능)
- ② 감사원장, 감사위원 :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 6년

(3) 법원

- ① 대법원장 : 6년(중임 불가능)
- ② 대법관 : 6년(연임 가능)
- ③ 판사 : 10년(연임 가능)

(4) 헌법재판소

- ① 헌법재판소장 : 규정 없음
- ② 헌법재판관 : 6년(연임 가능)

4. 국가기관의 권한대행자 비교 정리

(1) 국회의장

- ① 사고 :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 → 임시의장
- ② 국회의원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 : 사무총장
- ③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 최다선 의원 → 연장자

(2) 행정부

- ① 대통령 :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 ②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 →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
- ③ 감사원장 : 최장 기간 재직 한 감사위원 → 연장자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상임위원

(3) 대법원장 : 선임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

- ①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 ② 권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 → 연장자 순)

5. 의결정족수 비교 정리

	의결정족수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부결
국무회의	재적과반수출석, 출석2/3이상찬성	규정 없음
감사원	재적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위원장이 정한다.
대법관회의	재적2/3출석, 출석과반수찬성	의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과반수찬성	규정 없음

6. 헌법재판 비교

위헌법률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정당해산심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탄핵심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구두변론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서면심리

7. 헌법 개정 절차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대통령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즉시 대통령

8.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의 절차

- 제소기간의 기산점 : 선거소송은 선거일, 당선소송은 당선인결정일

대통령선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국회의원선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시도지사 선거 ---->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청장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시군구의원선거 ---> 14일 이내에 시도선관위에 소청 --->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제소

9. 한일어업협정(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2)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의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 (1)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
병역종류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지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에 다른 병역의 종류나 내용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불완전·불충분하다는 부진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분이 상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되는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2)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용은 결코 병역의무의 면제와 특혜의 부여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1. 통합진보당 해산(헌재 2014.12.19, 2013헌다1)

(1)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며, 통상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따라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 영역에서 배제된다.

(2)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해산의 사유

①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④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헌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⑥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4) 어떠한 정당을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1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헌재 2022.1.27, 2018헌마1162)

(1)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1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10.28, 2021헌나1).

(1)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2) 헌법 제65조 제4항 후문 및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이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니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하는 판단이 동일한 사실로 해당 법원이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3)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한다.

(4)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5) 임기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국 어

신통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문법과 어휘 요약 -

1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의 변동	교체(대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첨가	사잇소리현상, ‘ㄴ’첨가
	축약	모음축약, 자음축약(거센소리되기)
	탈락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ㅡ’ 탈락
	도치	음운 도치, 음절 도치

2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 체계

구분	제자 원리	기본자	응용자
초성(자음) 체계	발음기관 상형	ㄱ, ㄴ, ㄷ, ㄹ, ㄺ	- 가획자 → ㅋ, ㆁ, ㆅ, ㆆ,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 이체자 → ㆁ, ㆒, ㆓
중성(모음) 체계	천지인 삼재 상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초출자 → ㅏ, ㅑ, ㅓ, ㅕ - 재출자 → ㅗ, ㅛ, ㅜ, ㅠ, ㅡ, ㅣ

3 중세 국어의 특징

음운	●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 𐄂, 𐄃, 𐄄’과 같은 문자도 있었음.(𐄂, 𐄄은 세조 이후, △은 16c, 𐄃은 17c, 𐄄는 1933년에 각각 사라지거나 바뀜.) ●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있었음.(임진란 이후 사라짐) ● ‘𐄀, 𐄁, 𐄂’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모음 조화 현상이 잘 지켜짐.(16c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함.)
문법	● 주격 조사는 ‘이’와 ‘ㅣ’가 주로 쓰임.(‘가’는 17c), 명사형 어미는 ‘-옵/-옵’이 쓰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보다 다양하게 발달함.(-시/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습/줍/습)
표기	● 받침 표기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사용하는 8종성(가죽용)법(표음적 표기)이 원칙이었음. ● 이어적기(연철, 표음적 표기)가 일반적이었고, 16c이후 과도기 모습인 거듭적기(흔철, 중철) 표기와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분철, 표의적 표기)도 쓰이게 됨. ● 한자음은 초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밝혀 적는 『동국정운』 식으로 표기하다가 점차 실제 발음에 맞게 표기함.(세조 이후 동국정운식 한자음 폐기)

4 파생어와 합성어

1. 파생어

- (1) 접두사 결합 : 만아들, 맨발, 솥치녀, 알부자, 애호박, 휘두르다, 깔보다, 드높다
(2) 접미사 결합 : 지붕, 늑다리, 맞추다, 차갑다, 둥그렇다, 놀랍다, 진실로, 비로소, 마주

2. 합성어

- (1) 통사적(명사+명사, 관형어+체언, 부사어+용언,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부사, 조사 생략) : 손발, 둘다리, 길짐승, 날짐승, 맛있다, 힘쓰다, 가로지르다, 앞서다, 온종일, 죄다, 곧잘, 짹어지다.
- (2) 비통사적(부사+명사, 어미 생략) : 부슬비, 여닫다, 높푸르다, 뛰놀다

3. 이중 복합어

- (1) 합성어의 파생 : 합성어가 파생법에 의하여 다시 파생되는 것을 말함. 결과적으로는 파생어가 됨
 팽이(틀)+치(다)+기(접사) → 팽이치기, 돌+팔매+질(접사), 달+달+이(접사) → 다달이, 살+살+이(접사) → 살살이, 나(고)+들(다)+이(접사) → 나들이, 꺾(어)+꽃(다)+이(접사) → 꺾꽃이
- (2) 파생어의 합성 : 파생어가 합성법에 의하여 다시 합성되는 것을 말함. 결과적으로는 합성어가 됨
 돌(접사)+배 → 돌배(파생어)+나무 → 돌배나무(합성어), 병+마개(막+애) → 병마개, 통+조림(조리+口) → 통조림, 오이지(오이+지)+무침(무치+口) → 오이지무침, 맞춤(맞추+口)+법 → 맞춤법

5 문장의 짜임새

- (1) 홀문장 그는 마침내 공무원이 되었다.
- (2) 겹문장

- ① 안은(안긴)문장
- ㉠ 명사절 : ~(으)口 / 기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 이번에 네가 꼭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 서술절 : 주어+주어+서술어
 토끼는 귀가 크다. /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 ㉢ 관형절 : ~(으)ㄴ / (으)ㄷ
 지수가 너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니? ㉞ 동격 관형절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㉞ 관계관형절(관형절 내 성분생략)
- ㉣ 부사절 : 주어+없이 / 같이 / 달리 // -게 / 듯이 / 도록 / (아, 어)서 [종속절로 볼 수도 있음]
 비가 소라도 없이 내린다. //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 ㉤ 인용절 : ~라고(직접) // ~고(간접)
 ♪ 그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했다. // 그녀가 당신 말이 옳다고 말했다. / 많이 먹으라고 했다.
- ② 이어진 문장
-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앞뒤 절의 위치를 바꿔보아도 의미가 같음
 순희는 줄었지만, 나는 줄지 않았다. = 나는 줄지 않았지만, 순희는 줄었다.
-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다름
 눈이 와서, 길이 무척 미끄러웠다. ≠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6 높임 표현의 유형

1. 주체 높임

- (1) 직접 높임 : 전어말 어미 ‘-(으)시-나’ 높임 용언 사용 : 계시다, 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 (2) 간접 높임 :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을 높여 주체를 높임 : ‘-시-’, ‘있으시다, 없으시다’
- (3) 압존법 : 집안에서와 사제 간 주체 높임의 제약. (◇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도 허용함.)

2. 객체 높임 : 목적어 · 부사어 높임 : 모시다, 뵙다(뵈다) / 드리다, 여쭙다(여쭙다)

3. 상대 높임법

‘가다’의 예		명령법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감탄법
등 급						
격식체	합쇼체(아주높임)	가십시오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시지요)	—
	하오체(예사높임)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예사낮춤)	가게	가네(감세)	가는가/가나?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아주낮춤)	가거라/가라	간다	가(느)냐/가니?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두루높임)	가(세/셔)요	가요	가(세/셔)요?	가(세/셔)요	가는군요!
	해체(두루낮춤)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가지)	가는군!

7 표준 발음 (10제)

1. 첫째 음절 ‘의’는 [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니’는 [니]로 발음함. 첫째 음절 이외

의 ‘의’는 [이]를 허용하고,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함도 허용함.

➡ 의사[의사] // 널리리[널리리], 유회[유회] // 내의[내 : 의 / 내 : 이] // 우리의[우리의 / 우리에]

2. 접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함.

➡ 여덟[여덟], 넓다[널따], 넓네[널레], 짧다[잘따], 짧네요[잘레요], 얇고[알 : 꼬], 얇지[알 : 쩌]

다만, ‘뽕-’은 자음 앞에서 [뽕]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함.

➡ 뽕대[뽕 : 따], 뽕고[뽕 : 꼬], 뽕지[뽕 : 쩌], 뽕는[뽕 : 는 → 뽕 : 는] / 넙-죽하다[넙쭈카다], 넙-적하다[넙쩌카다], 넙-둥글다[넙똥글다], 넙-적다리[넙쩍다리]

☆ ‘넙따랗다, 넙쩍하다, 잘따랗다, 얇따랗다, 얇쩍하다, 얇파하다’ 등은 표기에 반영함.

3. 접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함.

➡ 맑다[따따], 읽지[익찌], 갑작갑작하다[갑작갑작카다], 굵다랗다[국따라타], 굵직하다[국찌카다], 굵적거리다[국쩍꺼리다], 늑수그레하다[늑수그레하다], 엄죽엄죽하다[엄쭈죽쭈카다], 후파[후파]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함.

➡ 맑게[말게], 물고[물꼬], 늑게[늑게], 얹거나[얼거나], 읽고[일꼬], 읽겠습니다[일쎌습니다]

4. ‘ㅎ(하, 하)’ 뒤 ‘ㄱ / ㄷ / ㅈ’이 결합되면 [ㅋ / ㅌ / ㅊ], ‘ㅅ’이 결합되면 [ㅆ], 받침 ‘ㄱ(리)’ / ‘ㄷ’ / ‘ㅂ(피)’ / ‘ㅈ(지)’이 뒤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합쳐서 [ㅋ / ㅌ / ㅊ / ㅆ]으로 발음함.

➡ 달지[달치], 끊기다[끈키다], 까망소[까 : 마쏘] // 만형[마형], 육학년[유강년],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몇 할[며탈], 온갖 힘[온 : 가텡], 부딪히다[부디치다](☆ 부딪치다[부딪치다])

다만, ‘ㅎ(하, 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의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음.

➡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앓은[아는], 싫어도[시러도], 옳은[오른]

5.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연음하여 발음함. 접받침의 경우에는, 뒤엎것을 옮겨 발음함.(‘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꽃을[꼬츰], 무릎에[무르페], 들녘에[들려케], 끝을[꼬툼], 밥술에[밥소테] / 발이[바치], 술이[수치], 끝이[꼬치] / 뉘이[닉씨], 닭이[달기], 여덟을[여덜블], 외곶으로[외곶쓰로], 값을[갑썰]

다만, 한글 자모 중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함.

➡ 디근이[디그시], 지웃을[지으슬], 키육이[키으기], 티을에[티으세], 피을을[피으블], 히을에[히으세]

6. 모음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함.

➡ 발 아래[바다레],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따], 겉웃[거둔],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맛있다[마덜따], 멋있다[머덜따]’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 가능.

7.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ㄷ]로 발음함.

➡ 군림[굴 : 림], 선릉[설릉], 연륙교[열륙교],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기], 달는[달른]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함.

➡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기관력[기판녁], 동원령[동 : 윈녕], 등산로[등산노], 상견례[상견네], 생산량[생산냥], 실천력[실천녁], 의견란[의 : 건난], 이원론[이 : 윈논], 입원료[이원노]

8. 관형격 기능의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함.

➡ 문-고리[문꼬리], 물-동이[물똥이], 물-살[물썰], 굴-속[굴 : 속], 벌-주[벌쭈], 김-국[김꼭], 섬-돌[섬똥], 잠-자리[잠짜리], 콩-국[콩꼭], 속임-수[소김쭈]

☆ ‘간단, 동기, 방법, 신기다, 창고, 창구’ 등에서 둘째 음절 첫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함.

한편, ‘불법(不法)[불법 / 불뽕] // 불법(佛法)[불법], 교과(敎科)[교과(서) / 교파(서)], 고가(高架)[고가] // 고가(古家)[고 : 가] // 고가(高價)[고까], 사법(司法)[사법] // 사법(私法)[사뽕]을 구별함.

※ 관건[관건 / 관견], 효과[효 : 과 / 효 : 파], 안-간힘[안간힘 / 안간힘], 인-기척[인끼척 / 인기척], 분수[분수 / 분쭈], 점수[점수 / 점쭈], 반값[반 : 갑 / 반 : 갑], 김-밥[김 : 밥 / 김 : 뽕] 등은 모두 가능함.

9. 한자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함.

➡ 숨-이불[숨 : 니불], 흙-이불[흔니불], 막-일[망닐], 샅-일[상닐], 맨-입[맨닙] // 내복-약[내 : 봉냐] // 한-여름[한녀름], 학-여울[향녀울],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캉널차], 콩-엿[콩녕] // 눈-요기[눈뇨기], 영엄-용[영엄농] // (대 / 맹)장-염[장념] ☆ ‘안-염[아 : 념], 간-염[가 : 념]’ 등은 첨가하지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도 가능함.

➡ 겹엿[겹 : 념 / 거 : 뉐], 금웅[금녕 / 그똥], 강약[강약 / 강냐], 연-이울[여니울 / 연니울]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ㄷ]로 발음한다. ➡ 들-일[들 : 뉐], 술-잇[술림]

※ 다음과 같은 단어는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음. ➡ 송별-연[송 : 버련], 등-용문[등용문]

☆ 금요일[그요일], 함유[하무] / 굴욕[구록], 밀약[미략], 일요일[이료일], 절약[저략], 화용[화룡] 등은 ‘ㄴ’이나 ‘ㄹ’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고, 받침을 연음하여 발음함.

10. 사이시옷이 올 때는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함.

➡ 냇가[내 : 까/넌 : 까], 셋길[새 : 길/쌔 : 길], 깃발[기빨/긴빨], 햇살[해쌀/헐쌀]

8 표준어와 맞춤법 (10제)

1.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암’도 이에 준함)

➡ 수곰, 수개미, 수거미, 수고양이, 수팽/장끼, 수나사, 수놈, 수벌, 수소/황소, 수용 // 수키와, 수돼지, 수캐, 수강아지, 수컷,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탉, 수평아리 (기껏 개강 때 닭병 걸린 당돌한 돼지) [☆ 수양, 수염소, 수쥐 (양염쥐)]

2. ‘윗-’으로 통일

➡ 윗넓이, 윗논썰,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배, 윗벌, 윗사람,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 위쪽, 위채, 위층, 위턱, 위팔 //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 웃국, 웃기, 웃돈, 웃어른, 웃통, 웃풍(외풍)

[☆ 윗웃(상의)/웃웃(겉옷)]

3. 준말과 본말을 표준어로 ➡ 노을/놀, 막대/막대기,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끼

《머물다/머무르다, 서둘다/서두르다, 서툴다/서투르다, (내)딘다/(내)디디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머물어, 서둘어서, 서툴었다, (내)딘어’는 ‘머물러, 서둘러서, 서툴렀다, (내)디더’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참] 짓물다(×), 거치르다(×)

4. 복수 표준어

➡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때때(신, 옷), 꺼림(직/칙)하다/계름(직/칙)하다, 봉숭아/봉선화, 가뭇/가물, 가없다/가엤다, -거리다/-대다, 곰곰/곰곰이, 넝쿨/덩굴,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뜨리다/-트리다, 만큼/만치, 여태/입때,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좀처럼/좀체, 척/체, 주어올리다/주어주다/주켜세우다/주켜올리다(‘칭찬하다’), 남(우)세스럽다/남사스럽다, 만날/맨날 //~기에/~길래, 개발개발/개발새발, 눈조리(표정, 위치)/눈꼬리(위치), 뜰/뜨락(+추상적 공간), 손자/손주(손자+손녀), 황허케/황하니, 두루뭇술하다/두리뭇실하다, 맨송맨송/맨송맨송/맹송맹송, 아웅다웅/아웅다웅, 야멸치다/야멸차다, 찌뿌듯하다/찌뿌둥하다, 치근거리다/추근거리다// 예쁘다/이쁘다, 마을/마실(가다), 차지다/찰지다, 푸르다/푸르르다, -고 싶다/-고프다, (-지) 마라/말아라, 마/말아, 마요/말아요, 주책이다/주책없다/주책맞다/주책스럽다

5. 두음법칙

(1) (ㄴ → ㅇ) ➡ 연년생(年年生), 연도, 회계 연도/회계연도, 연월일, 연이율, 연 10%의 이율/(한자 접두사나 합성어에서)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연말-연시 [☆ 삼 년/남녀, 은닉, 생년월일, 천년왕국]

(2) (ㄷ → ㅇ) ➡ 양심(良心), 유행/사육신, 무실역행/(모음이나 ‘ㄴ’ 받침 뒤) 비율, 백분율, 할인율, 출산율 [☆ 쌍룡, 오류도/음률, 경쟁률, 합격률, 취업률, 사망률, 출생률, 명중률]

(3) (ㄷ → ㄴ) ➡ 뇌성, 능묘/내-내월, 상-노인, 실-낙원, 부화-뇌동

[☆ 고령지, 한랭전선, 연로, 낙뢰, 동구룡, 왕룡, 태룡/냉랭하다, 녹록하다, 늠름하다]

6. 주요 용언의 활용

(1) ‘ㄷ’ 탈락 용언 ➡ 둥글다 : 둥그니, 둥근, 둥그시다, 둥그오/-지 마라/말아라, -지 마/말아

(2) ‘ㄷ’ 탈락 규칙 용언 ➡ 답그다 : 답가, 답갔다/잠그다 : 잠가, 잠갔다/치르다 : 치러, 치렀다

(3) ‘ㅂ’ 불규칙 용언 ➡ 가깝다 :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아름다워, 아니꼬워[☆ 고와, 도와]

(4) ‘르’ 불규칙 용언 ➡ 바르다 : 발라, 발랐다/벼르다 : 별리, 별렸다/가파르다 : 가팔라, 가팔랐다

(5) ‘ㅎ’ 불규칙 ➡ 하얗다 : 하야니, 하얗, 하야면, 하야오·하얗소/노랗다 : 노라네, 노란, 노라니, 노래

7. 접미사가 결합된 말

(1) 대개 ‘-이, -음/-로’ 접사나 ‘-이, -히’ 접사가 결합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음 ➡ 길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 늘그막, 빼드렁니, 꼬트머리, 이파리]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8. 사이시옷 표기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갯값, 콧밥, 나룻배, 나룻가지, 날갯짓, 냇가, 냇가지, 머릿기름, 모깃불, 사잇길/셋길, 선짓국, 순댓국, 찢조각, 아랫집, 윗글, 아랫글, 잇자국, 장맛비, 킷값, 헛바늘

[☆ 해님/개구멍, 머리글, 머리글자, 소리글자/개똥, 개뿔, 뒤꽂무니, 보리쌀, 허리띠, 허리춤]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땃나물, 땃놀이, 콧날, 아랫니, 덧마당, 아랫마을, 잇몸, 갯목, 냇물, 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두렛일, 덧일, 덧입맛, 배갯잇, 옷잇, 갯잎, 나뭇잎, 덧잎, 허드렛일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고양이과, 콧병, 막넛동생, 머릿방, 북엇국, 붓дук, 사글셋방, 사자밥, 셋강, 신붓감, 아랫방, 자릿세, 장밋빛, 전셋집, 절댓값, 진돗개, 콧병, 땃줄, 수, 핏가루, 핏배, 등꽃길, 하꽃길, 흥밋거리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갯날, 제삿날, 훗날, 붓물, 툇마루, 양치물, 팻말, 퓌말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6개)

➡ 뒤편(退間), 곳간(庫間), 횡수(回數), 숫자(數字), 셋방(貰房), 찻간(車間) : 퇴고 회수 세차(례)

[☆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도수(度數), 마구간(馬廐間), 소주잔(燒酒盞), 시가(時價), 이점(利點), 장미과(薔薇科),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제상(祭床), 초점(焦點), 화병(火病)]

✓ 노랫말, 본딤말, 존댓말, 혼삿말, 혼잣말, 시쳇말 / 겸사말, 꼬리말, 머리말, 반대말, 예사말, 인사말, 나라말, 우리말, 심마니말, 겨레말 // 개나리길, 장미길, 버드나무길 // 핑크빛, 피자집, / 남꽃불

9. 준말 표기

(1)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적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2) 만만하지/ 만만치, 적절하지/ 적절치 //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넉넉찮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섭섭찮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찮다

10. 유사어 구별

(1) 가름(← ‘가르다’, 나눔 · 구별 · 분별) ➡ 둘로 가름 // 갈음(← ‘갈다’, 교체 · 교환 · 대신함) ➡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 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합니다.

(2) 그러므로(그러니까) ➡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산다. // 그럼으로(써)(그렇게 하는 것으로) ➡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3) 느리다(속도) ➡ 행동이 / 진도가 / 성미가 // 느리다(길이) ➡ 고무줄을 / 엇가락을 / 바짓단을 // 느리다(양, 수, 힘) ➡ 수출량을 / 학생 수를 / 세력을 / 실력을 / 재산을.

(4) 떠다 ➡ 임무를 / 노기를 // 떠다(‘뜨이다’의 준말, 띄움) ➡ 원고에 오자가 눈에 띈다. / 눈에 띄게 달라졌다. / 귀가 번쩍 띄는 // 띄우다(‘뜨다’의 사동사) 편지를 / 배를 / 누룩을.

(5) 마치다 ➡ 벌써 일을 마쳤다. // 맞히다(사동) ➡ 정답을 맞히다. / 퀴즈의 답을 맞히다. // 맞추다(사동) ➡ 안경을 맞추다. / 문짜를 문틀에 맞추다. / 친구들끼리 서로 답을 맞추어 보다. / 일정을 맞추다.

(6) 부딪치다(강제) ➡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부딪히다(피동) ➡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7) 부치다 ➡ 힘이 부치는 일이다. / 편지를 / 논밭을 / 빈대떡을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인쇄에 부치는 원고 / 삼촌 집에 숙식을 / 비밀에 / 투표에 // 붙이다(사동) ➡ 우표를 / 책상을 벽에 / 홍정을 / 불을 / 감시원을 / 조건을 / 취미를 / 별명을 / 내기에 1000원을 / 이유를 / 다리에 힘을 / 교미를.

(8) - 대(놀람이나 못마땅함 / 간접적 전달 ‘-다고 해’) ➡ 왜 이렇게 일이 많대? / 신랑이 어쩔 이렇게 잘생겼대? /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 / 사람이 아주 똑똑하대. / 칠수도 오겠대?(남이 말한 내용의 간접적 전달) // - 테(-더라) ➡ 그가 그런 말을 하테. / 경치가 과연 좋테.(경험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9) - (으)로서(자격, 신분, 위상, 위치, 가치, 시작) ➡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 - (으)로써(수단, 방법, 재료, 도구, 이유, 시간 썬에 넣는 한계) ➡ 닭으로써 평을 대신했다. / 감금죄는 ~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10) - (으)므로(어미) ➡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 (- ㅁ, - 음)으로(써)(조사) ➡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9 띄어쓰기 (10제)

1.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씀.

➡ 꽃에서부터,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는커녕, “알았다.”라고, 방에설랑, 자주 만남시다그러

2. 의존 명사는 띄어 씀.

➡ 가는 ㅁ데가, 자체 ㅁ판에는, 친구 ㅁ때문에, 갔을 ㅁ적에, 할 ㅁ줄 안다, 벗은 ㅁ채, 아는 ㅁ체(적), 할 ㅁ터이나(테냐/테고/테니/테네/테야), -기에/-(으)니까 ㅁ망정이지(☆ -ㄴ망정 : 어미), 금 서 ㅁ돈, 북어 한 ㅁ궂, 오징어 한 ㅁ썰

3. 만큼, 대로, 뿐, 만 (조사 // 의존 명사)

➡ 전봇대만큼 크다, 볼 ㅁ만큼 보았다, 법대로 해라, 약속한 ㅁ대로, 온통 남자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웃고만 있을 ㅁ뿐이다, 시간만 보냈다 ㅁ뿐이지

4. 만, 지 (조사, 어미 // 의존 명사-경과한 시간, 횡수)

➡ 하나만 알고, 그것만 못하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떠난 ㅁ지 사흘 ㅁ만에 돌아왔다, 우리가 얼마 ㅁ만인가, 나는 두 번 ㅁ만에 그 시험에 합격하였다.

5. 데 (-ㄴ데 : 설명 감탄 -어미 // 데 : 것 곳 경우 -의존명사)

➡ 우리 고향데 인심 좋은 곳이지, 나무가 정말 큰데. // 올 ㅁ데 갈 ㅁ데 없는 사람, 다 읽는 ㅁ데 삼 일이 걸렸다/ 졸업장을 따는 ㅁ데 목적이 있다, 머리 아픈 ㅁ데 먹는 약

6.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최치원 ㅁ선생, 백범 ㅁ김구 ㅁ선생, 충무공 ㅁ이순신 ㅁ장군, 강 ㅁ선생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억/남궁 ㅁ억, 독고준/독고 ㅁ준, 황보지봉/황보 ㅁ지봉

7. 수(數)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삼조 ㅁ이천삼백십이 ㅁ삼천사백오십육만 ㅁ칠천팔백구십팔/3조 ㅁ2312억 ㅁ3456만 ㅁ7898, 이만 오천 ㅁ원/25,000 ㅁ원/25,000원

8.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결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이사장 √뭇 √이사들, 책상, 결상 √들이 있다.
9.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좀 √더 √큰 √것 / 좀더 √큰것, 이 √말 √저 √말 / 이말 √저말, 한 √잎 두 √잎 / 한잎 √두잎
10.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다 먹어 √버렸다 / 다 먹어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 비가 올듯하다

10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10제)

1.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7자음)만 적는다.
➡ 굿모닝(good morning), 디스켓(diskette), 마켓(market), 숍(shop), 스크랩(scrap), 집시(Gypsy)
2.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가스(gas), 피에로(pierrot), 사이즈(size), 사이렌(siren), 사이클(cycle), 사인(sign), 삿포로(Sapporo), 센터(center), 서비스, 서커스(circus), 서클(circle), 선글라스(sunglass), 재즈(jazz), 잼(jam), 카페(café), 코냑(cognac), 콩트 conte [☆ 빨치산/파르티잔, ‘쓰촨성’, ‘마오쩌둥’, ‘쓰시마섬’, ‘푸켓’, ‘호찌민’]
3.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 로봇(robot), 라켓(racket), 로켓(rocket), (슈퍼)마켓(supermarket), 보이콧(boycott), 셔벗(sherbet), 소켓(socket), 스폿(spot), 알파벳(alphabet), 카펫(carpet), 티켓(ticket), 파일럿(pilot) [☆ 네트(net), 메리트(merit), 배트(bat), 비트(bit), 세트(set), 쇼크(shock), 히트(hit), 히프(hip)]
4. 유음, 비음, 이중모음, 장모음 등의 뒤에 오거나 어말과 자음 앞에 오는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 미뉴에트(minuet), 샤프(sharp), 지프(jeep), 케이크(cake), 테이프(tape), 플루트(flute) // 애드리브(ad-lib), 피라미드(Pyramid), 바리케이드(barricade), 로브스터(lobster) / 랍스터
5. 어중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르’로 적는다.
➡ 가톨릭(catholic), 곤돌라(gondola), 글라스(glass), 멜론(melon), 바셀린(vaseline), 스프링클러(sprinkler), 알칼리(alkali), 카탈로그(catalog), 클라이맥스(climax), 클래스(class), 클랙슨(klaxon), 클럽(club), 클로버(clover), 클리닉(clinic), 킬로(kilo), 팜플렛(pamphlet), 플라스틱(plastic), 플라자(plaza), 플래카드(placard)
6.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 그리스(Greece), 그리스(grease, 기름), 덴마크(Denmark), 마가린(margarine), 마케팅(marketing) [☆ 셀룰로오스/셀룰로스(cellulose), 알코올(alcohol), 요오드(Jod)]
7.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레인보(rainbow), 도넛(doughnut), 스노(snow), 윈도우(window), 쇼윈도(show window), 소파(sofa), 스트로(straw), (아이)새도(eye shadow), 옐로(yellow), 러시아워(rush hour), 플라워(flower)
8.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 더그아웃(dugout), 아울렛(outlet), 하이라이트(highlight), 헤드라이트(headlight)
9. 로마자 표기에서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속리산 Songnisan,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angsujeon, 독립문 Dongnimmun
10. 전음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전자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낙성대 Nakseongdae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 행정 구역 단위 표기에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삼죽면 Samjuk-myeon

국사

정우교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001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건국 ~ 3 ^c	4 ^c	5 ^c
고구려	- 동명성왕(기원전 37) - 부여 유이민(주몽) - 압록강 토착 세력 - 태조왕 (53~146) - 왕위 세습 (형제 상속, 고씨) - 동옥저 복속 - 고국천왕 (179~197) - 행정적 5부 - 부자 상속 - 진대법 실시 (을파소, 194)	- 미천왕 (300~331) - 서안평 점령(311) - 낙랑 축출(313), 대방 축출(314) → 한반도 진출의 발판 마련 - 고국원왕 (331~371) - 전연(모용황)의 침입(342) - 근초고왕(백제)의 침입 → 평양성 함락, 전사 - 소수림왕 (371~384) - 불교 수용(372, 전진) -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 광개토대왕 (391~413) - 북진 정책 -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400) → 전기 가야 연맹 해체 - 거란, 후연 격파 → 요동과 만주 대부분을 차지 - 영락(최초의 연호) - 장수왕 (413~491) - 남진 정책 - 중국 남·북조와 수교 - 평양 천도(427) → 한성 함락 - 한강 이남 점령 → 중원 고구려비, 호우명 그릇 - 홍안령 일대 지두우 분할 점령
백제	- 온조 (기원전 18) - 고구려 유이민 - 한강 토착 세력 - 고이왕 (234~286) - 관등제 정비 (6좌평, 16관등) - 관복제 도입(260) - 목지국 병합 → 한강 유역 장악	- 근초고왕 (346~375) - 마한의 잔여 세력 정복(369) - 가야에 대한 지배권 행사 -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 - 해외 진출 → 요서, 산둥 / 규슈 - 왜왕에게 칠지도 하사(368) - 서기(고흥) - 부자 상속 - 침류왕 (384~385) - 불교 공인(384, 동진)	- 비유왕 - 나제동맹 성립(433) - 개로왕 (455~475) - 장수왕의 공격, 북위에 국서 - 한성 함락, 전사(475) - 문주왕 (475~477) - 웅진(공주) 천도(475) - 동성왕 (479~501) - 나제동맹 강화(소지, 493)
신라	- 박혁거세(기원전 57) - 사로국 (6촌) (경주 토착 세력) - 유이민 세력 미약	- 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 차지 - 내물마립간 (356~402) - 왜의 침입 (400) → 광개토대왕의 지원, 격퇴 → 고구려 군대의 주둔 → 고구려의 내정 간섭 → 호우명 그릇 - 김씨 왕위 계승권 확립 - 마립간	- 눌지마립간 (417~458) - 나제동맹 성립(비유왕, 433) - 부자 상속 - 불교 전래(목호자) - 소지마립간 (479~500) - 나제동맹 강화(결혼동맹) - 백제, 동성왕(493)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1

① 삼국의 성립과 발전

6 ^C	7 ^C
[가야] B (금관가야) → A (대가야) - 금관가야 - 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법흥왕) - 대가야 - 후기 가야 연맹 주도, 멸망(진흥왕)	- 영양왕 (590~618) - 죽령 이북 회복, 신라 압박(온달, 590) / 신집 5권 - 말갈 세력과 손잡고 요서를 선제 공격(598) → 수와 전쟁(살수 대첩 · 을지문덕, 612) - 영류왕 (618~642) - 천리장성 축조(631~647) - 보장왕 (642~668) → 연개소문 집권 - 당과 전쟁(안시성 전투 · 양만춘, 645) - 멸망(668) → 안동도호부 설치(668) - 부흥 운동 ← 신라의 지원 - 안승(보덕국왕 → 진골) / 검모잠 · 고연무
- 무령왕 (501~523) - 지방의 22 담로 → 왕족 파견 - 중국, 남조(양)과 교류 시작(백제영동대장군) - 성왕 (523~554) - 제 2의 전성기 → X - 사비(부여, 538) 천도, 남부여(국호) - 중앙·지방 제도 정비 / 불교 진흥(검익) → 일본에 불교 전파(노리사치계, 552) - 중국, 남조(양)과 교류 강화 - 신라와 연합, 한강 유역 일시 회복 → 진흥왕의 배신 → 전사(관산성 전투, 554)	- 무왕 (600~641) - 궁남지, 왕흥사 · 미륵사 창건, 익산 천도 시도 - 의자왕 (641~660) - 해동증자 / 대야성 등 신라 40여 성 함락(642) - 멸망(660) → 웅진도독부 설치(660) → 소부리주(671) - 부흥 운동(660~663) ← 왜의 지원(백강전투) - 주류성 → 왕자 풍(661) / 복신 · 도침 - 임존성 → 흑치상지
- 지증왕 (500~514) - 한화 정책 - 신라(국호), 왕호 사용 - 수도·지방 행정 구역 정리 - 우산국 복속(이사부) / 순장 금지, 우경 실시 - 법흥왕 (514~540) - 건원(536) - 병부 설치, 율령 반포, 공복 제정 / 상대등 설치 - 불교 공인(이차돈 순교, 527) / 금관가야 정복 - 진흥왕 (540~576) - 화랑도 개편, 국사(거칠부), 황룡사 창건 - 한강 유역 진출, 신주 설치 → 관산성 전투 → 수, 당과 직접 교류(당항성) - 대가야 정복(562) / 단양 적성비, 순수비(4개)	- 진평왕 (579~632) - 세속 5계, 걸사표(수, 원광) - 선덕여왕 (632~647) → 최초 여왕 / 지기삼사 - 첨성대 / 분황사, 영묘사 / 황룡사 9층 목탑 - 진덕여왕 (647~654) - 태평송(당) / 태화, 아흘 - 무열왕 (654~661) - 최초의 진골, 백제 멸망 - 문무왕 (661~681) → 삼국 통일(676) - 계림도독부 설치(663) / 취리산 회맹(665) - 나당 전쟁(소부리주 설치 / 매소성 · 기벌포 전투) - 통일의 한계 - 외세 이용, 대동강~원산만 이남

002

III.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1. 고대의 정치 2

② 남북국의 정치

- 통일 신라의 발전

중 대	하 대
▪ 신문왕 (31:681~692) - 전제 왕권의 확립 - 김흠돌의 난 진압(681) → 진골 세력 숙청 - 집권 체제의 강화 →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국학 설립(682) - 6 두품 세력의 성장(집사부 시랑) - 감은사, 만파식적(682) / 달구벌 천도 시도 ▪ 성덕왕 (33:702~737) - 무왕 - 정전 지급, 공자와 제자의 화상 국학에 안치 ▪ 경덕왕 (35:742~765) - 문왕 - 국학 → 태학감(747) / 녹읍 부활(757) -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주조 시작	▪ 원성왕 (38:785~798) - 독서삼품과 설치 ▪ 헌덕왕 (41:809~826) - 김헌창, 김범문의 난 ▪ 흥덕왕 (42:826~836) - 청해진 설치(장보고) ▪ 진성(여)왕 (51:887~897) - 원종·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 견훤, 궁예의 성장, 최치원의 시무 10조 제시 - 향가집 <삼대목> 편찬(위홍, 888) ▪ 새로운 지방 세력의 성장 - 호족과 6 두품 ▪ 진성여왕 이후 - 후삼국 시대

- 발해

무 왕 (2:719~737, 대무예)	문 왕 (3:737~793, 대흠무)	선 왕 (10:818~830, 대인수)
시 작	발 전	전 성 기
▪ 8C 초 → 북만주 일대 장악 ▪ 당 - 흑수 말갈을 이용, 발해 건제 - 흑수 말갈 공격(대무예 X) - 산둥(장문휴, 수군), 요서 공격 ▪ 신라 - 북방 강화(성덕왕) ▪ 돌궐, 일본과 외교 관계 → 당, 신라 견제 ▪ 일본에 보낸 국서(722) → 고구려 계승 표방	▪ 천도(동모산) → 중경 → 상경 → 동경 (5대 성왕, 상경 천도) ▪ 당과 친선 - 3성 6부제 실시 - 중국도 / 빈공과 합격 - 발해국왕, - 대홍보력금륜성법대왕 ▪ 신라 - 신라도 개설(경덕왕) ▪ 일본에 보낸 국서 → 고려 국왕, 천손 ▪ 황상(皇上), 황제국 표방	▪ 대야발(대조영의 동생) 직제 ▪ 말갈 대부분을 복속, 요동 진출 ▪ 지방제도 정비(5경 15부 62주) ▪ 해동성국
인 안	대 홍	건 홍

003

2. 고려의 정치

① 고려 초기

태 조	광 종	성 종
• 후창 • 중앙 관리·사성·결혼 정책 • 사십관, 기인 제도 • 정계·계백료서 / 훈요 10조 • 복진 정책 - 청천강 ~ 영흥만	• 노비안검법(956) • 과거제도 실시(958) - 쌍기 • 백관의 공복 제정(960) • 공신과 호족 숙청 • 광덕·준풍 / 황도, 서도	• 최승로 - 5조 정적평·시무 28조 • 2성 6부 / 도병마사, 식목도감 • 지방관 파견 (12목) 시작 → 향리 제도 개편(호장, 부호장) • 국자감 정비 • 거란 침입 - 서희, 강동 6주
• 역분전(940) • 연등회, 팔관회 개최	• 주현공부법 • 귀법사(균여)	• 건원중보(996) - 최초 • 연등회, 팔관회 폐지

② 원 간섭기의 개혁 정치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 관제 격하 / 내정 간섭 • 영토 상실, 일본 원정 •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 사림원(1298) - 인사, 왕명출납 • 소금·철 전매제(각염법, 1298) → 국가 재정 확충 시도 • 재상지중(복위교서) • 만권당(1314) - 원 학자와 교류	• 1차 - 친원 세력 숙청(기철), 관제 복구 정동행성(이문소) 혁파 / 쌍성총관부 수복 → 요동 공략 • 홍건적(1359, 1361)의 침입 • 2차 - 신돈 등용, 전민변정도감 정비, 성균관·과거제 정비 → 신진 사대부 등장

3. 조선의 정치

① 조선 초기

태 조	태 종	세 종	세 조	성 종
• 정도전 - 조선경국전 - 재상 중심 정치 • 불씨잡변	• 왕자의 난 • 국왕 중심 통치 - 6 조 직계제 실시 - 사간원 독립 - 사병 폐지 • 호패법 실시 • 노비 변정 사업 • 향·부곡 → 소멸	• 의정부 서사제 • 집현전 설치 • 4군, 6진 개척 • 쓰시마(이종무) • 진분 6등, 연분 9등 • 칠정산 편찬 • 훈민정음 창제	• 계유정란 • 6 조 직계제 부활 • 집현전 폐지 경연 중단 • 경국대전 편찬 시작(호·형전) • 보법 / 직전법 • 원각사지 10층탑	• 경국대전 반포 • 홍문관 설치 - 집현전 계승, 경연 주관 • 사림파 등용 • 관수관급제 • 동국통감

② 조선 후기 - 영조 Vs 정조

영 조	정 조
• 탕평과 육성(탕평비), 군영 정비 • 산림 존재 X, 서원 정리, 이조전랑 권한 축소 • 속대전 편찬, 균역법 시행 • 사형수 삼십제,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 이인좌의 난(청주, 1728) / 나주 패서 사건(1755) • 임오화변(176) → 시파·벽파 • 완론 탕평	• 시파 - 소론·남인 + 일부 노론 중용 • 초계문신 제도 → 규장각, 지방 수령 권한 ↑ → 고금도서집성 수입, 문체반정 시도 • 장용영 설치, 무예도보통지, 대전통편, 화성 • 신해통공 - 금난전권 폐지(육의전 제외) • 서얼·노비 차별 완화 • 준론 탕평 / 상언, 격쟁

004

V.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1. 경제 제도

① 수취 체제(세금)

조 선		
초 기 (15 ^C)	중 기 (16 ^C)	후 기 (17 ^C - 19 ^C)
▪ 수확량의 1 / 10 (1 결당 30두) → 경창(조운) - 잉류지역 - 평안도 · 함경도 ▪ 공법 (세종) - 연분 9 등법 → 풍흉, 지역 단위, 20 ~ 4 두 - 전분 6 등법 → 비옥도, 1결의 면적이 다름	▪ 대납 → 대납가 ↑ ▪ 방납의 폐단 → 유망 농민 증가 ▪ 개선 시도 - 수미법	▪ 영정법(인조) - 전세의 정액화 - 풍흉에 관계없이 1 결당 4 두 - 국가 수입 감소 ⇔ 각종 부가세
▪ 호세, 토산물 ▪ 종류 - 상공 · 별공 · 진상 ▪ 중앙 관청 → 군현 할당 → 가호 할당 ▪ 폐단 - 생산량 감소, 생산지 변화 - 다른 곳에서 구입, 납부	▪ 대납 → 대납가 ↑ ▪ 방납의 폐단 → 유망 농민 증가 ▪ 개선 시도 - 수미법	▪ 대동법(선혜청) - 공납의 전세화(1결당 12 두) - 농민 부담 감소, 지주 부담 증가 - 경기도(광해군) → 전국 확대(숙종) - 공인 등장,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현물 징수 존속 → 별공, 진상
▪ 군역 - 정군, 보인, 면제 ▪ 요역 - 정남의 수, 토지 8 결당 1 인 → 실제는 임의로 징발	▪ 요역 기피 → 군역의 요역화 ▪ 대립제 → 대립가 ↑ ▪ 방군수포 · 군적수포제 실시	▪ 군역법(균역청) - 영조, 1년 1필 - 이중 삼중의 군포 징수 → 부과량 증가 - 결작 / 선무군관포 / 어장 · 선박 · 염세

② 수취 체제(세금)

삼 국	남북국		고 려	조 선
상 대	중 대	하 대		
▪ 녹읍 ▪ 식읍	▪ 관료전 지급 ▪ 녹읍 폐지 ▪ 정전 지급	▪ 녹읍 부활	▪ 역분전 ▪ 시정 / 개정 / 경정 전시과 ▪ 전시과 붕괴 → 녹과전 지급	▪ 과전법(고려 공양왕) ▪ 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 직전법 폐지(명종)

2. 경제 활동 - 조선 후기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화폐	대외무역
▪ 모내기법 확대(이모작) → 광작 → 부농 증가 ▪ 견종법 ▪ 상품 작물 ▪ 쌀의 상품화 ▪ 농가집성 ▪ 실학적 농서	▪ 민영 수공업 발달 - 납포장 증가 - 선대제 - 독립 자영	▪ 사채 (설점수세) ▪ 잡채 ▪ 상인 물주 ▪ 덕대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공인 / 도고 - 금난전권 폐지 (정조) - 송상 - 경강상인 ▪ 장시 → 5 일장 ▪ 포구(객주, 여각)	▪ 전국 유통 → 상평통보 ▪ 전황 ▪ 환 · 어음	▪ 활발 - 개시 / 후시

005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사상사

① 불교

삼 국	남북국	고 려	
상 대	중 대 ~ 하 대	중 기	무신 집권기
- 수용 - 역할 - 특징	- 원효 - 불교의 대중화 - 의상 - 교종 Vs 선종	- 의천 - 교선통합, 천태종	- 신앙 결사 운동 - 요세, 지눌 - 지눌 - 선교통합, 조계종 - 혜심 - 유불일치설

② 역사서

- 고려

고 려				
초 기	중 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 왕조실록 7 대 실록 - 구삼국사	삼국사기 (1145, 김부식)	- 동명왕편 (1192, 이규보) - 해동고승전 (1215, 각훈)	- 삼국유사 (1281, 일연) - 제왕운기 (1287, 이승휴)	사략(이제현)
고구려 계승 의식	신라 계승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	고조선 계승 의식	

- 조선 초기

동국통감	서거정	세조 ~ 성종, 고조선에서 고려 말 /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	-----	---

- 조선 후기

이 익		중국 중심의 역사관 비판	
안정복	동사강목	정통론 체계화 (삼한 정통론), 고증 사학 토대 마련	
이공익	연려실기술	조선 시대 정치와 문화 정리, 기사본말체	
한치윤	해동역사	외국 자료 이용 → 민족사 인식의 폭 확대	
이종휘	동사	고구려사	-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로 확대 → 한반도 중심 사관 극복
유득공	발해고	발해사	

2. 과학기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후 기
천문학	사천대	서운관	▪ 천상열차분야지도	▪ 김석문, 홍대용 - 지전설, 무한우주론
	선명력(당)	수시력(원, 충선왕)	▪ 칠정산 (세종, 서울)	▪ 시현력(김육)
인쇄술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현존)	▪ 태종 - 주자소, 계미자 ▪ 세종 - 조지서, 갑인자, 식자판 조립 방안	
의 학		향약구급방 (현존)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백과사전)	동의보감(허준) 동의수세보원(이제마)
무 기		최무선 (화통도감)	신기전, 거북선	

3. 기타 - 조선

초 기	중 기	후 기
▪ 삼강행실도(세종) ▪ 국조오례의(성종)	▪ 사림 - 소학·주자가례 보급 ▪ 정부 - 이륜행실도·동몽수지	백과사전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팔도도 (태종)	조선방역지도 - 현존	▪ 곤여만국전도 ▪ 동국지도(정상기) - 100리척 ▪ 대동여지도 (김정호) - 10리
동국여지승람 (성종)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종) - 현존	택리지 (이중환)

4. 예술사

고 려			조 선		
전 기	후 기		초 기	중 기	후 기
궁궐과 사원 중심	▪ 주심포 양식 ▪ 다포 양식		공공건물 무위사 극락전	서원 건축	법주사 팔상전 화성 / 경복궁 중건
월정사 8각 9층 석탑(송)	경천사 10층 석탑(원)		원각사 10층 석탑		
▪ 대형 철불, 석불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여래 좌상					
고려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 백자	
구양순체	송설체		한호(석봉체)		이광사 (동국진체) 김정희 (추사체)
전문 화원 문인화	친산대림도 관음보살도	▪ 몽유도원도 ▪ 고사관수도	다양한 화풍 (산수화·사군자)		▪ 진경산수화 ▪ 풍속화 ▪ 민화의 유행
▪ 아악 - 대성악(송), 궁중 음악 ▪ 속악(향악) -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 탈놀이 ▪ 산대놀이 성행 ▪ 판소리 ▪ 한글 소설 ▪ 사설시조

006

VII. 근대 사회의 전개

2. 러일 대립기 - 개혁

갑오 개혁 - 1 차	갑오 개혁 - 2 차	을미 개혁
- 대원군 섭정, 군국기무처 주도 - 갑신정변, 동학농민 요구 반영	- 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 박영효 주도 → 홍범 14조	- 삼국간섭 - 러·프·독 - 박영효 실각, 을미사변
-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 - 개국 연호 사용 - 과거 제도 폐지 - 재정의 일원화 - 탁지 아문 - 은본위 화폐제(은화, 백동화) - 조세의 금납화 - 신분 제도 폐지	- 청과의 관계 청산 - 내각 권한 강화(8아문 → 7부) - 지방관 권한 축소(8도 → 23부) - 행정권 / 사법권, 군사권 X - 재판소 설치 → 사법권 분리	- 연호 - 건양 - 친위대, 진위대 설치 - 태양력 사용 - 단발령 시행 - 종두법 시행 - 소학교 설치 - 우편 사무 시작
- 고문·연좌법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가 허용	- 교육입국조서 반포 → 한성 사범학교 설립 → 외국어학교 관제 공포	- 을미의병 - 아관파천 → 개혁 중단

독립협회	광무 개혁
- 아관파천 이후, 이권 침탈 심화 - 민중 계몽 - 서재필 → 독립신문(1896. 4) → 독립협회(1896. 7)	- 대한제국(1897) / 광무개혁(1899) -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 비판 → 점진적 개혁 - 구분 신참 - 개혁 기구 - 교정소
1기 - 민중 계몽 → 정부 관료 주도, 민중 참여 → 계몽 시작	- 전제 황권 강화 - 대한민국 국제 - 원수부 설치(황제의 군권 강화), 시위대·진위대 - 간도 편입 정책 → 간도 관리사 파견(이범윤) - 양전 사업,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 시도 - 상공업 진흥 - 근대적 회사 설립 - 근대적 시설 확충 - 교육 장려 - 중학교, 상공학교
2기 - 자주 국권 → 민중 주도, 만민공동회 ⇔ 러, 이권 침탈(철영도 조차 등) 3기 - 자유 민권, 자강 개혁 → 박정양 내각 수립, 관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중추원 설립 시도	

3. 국권피탈기 - 국권 회복 운동(의병)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시행	을사 보호 조약, 외교권 박탈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 주도 - 보수 유생 - 참여 - 민중(농민) → 동학 농민군 잔여 세력이 대거 가담 - 해산, 아관파천 이후 → 단발령 철회 → 고종, 해산 권고 조직 → 농민 일부, 활빈당에 가담	- 최익현 → 보수 유생, 대마도 - 신돌석 → 평민 의병장 등장	- 해산 군인 → 의병 합류 - 의병 연합, 13도 창의군 → 이인영, 허위 →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 요구 → 서울 진공 작전 시도 - 일, 남한 대토벌 (1909) → 위축 → 국외, 독립군 활동

007

VIII.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 통치

한일병합 1910	3·1 운동 1919	중일전쟁 1937	광복 1945
1기 1910' S 무단통치	2기 1920' S 문화통치	3-2기 1930~40' S 민족말살통치	
- 총독 - 육·해군 대장 - 중추원 - 총독자문기관 - 헌병 경찰 - 즉결, 태형 - 관리, 교원 - 칼, 제복 - 자유 박탈	- 총독 - 문관 가능 - 지방 자치 - 평·협의회 - 제도 개정 - 보통 경찰 - 무관 복제 폐지 - 자유의 제한적 허용 - 신문 발행 (조선·동아) ↔ 치안 유지법 - 교육 기회 확대 - 친일세력 양성, 자치운동 시작	- 황국 신민화 정책 → 동화 - 신사참배, 궁성요배 - 황국신민서사 암송 - 내선일체, 조선어 과목 폐지 - 일본식 성명 강요 - 조선·동아 폐간 - 애국반	
- 토지조사사업 - 회사령 - 허가제 - 산림·어업·광업령 - 철도, 항만, 도로 - 담배, 인삼 - 총 전매	- 산미증식계획 - 회사령 폐지 - 신고제 → 일본, 산업이민, 경 - 관세 철폐, 신은행령 ↔ 물산장려운동	- 총동원 체제 (인) 지원병, 징용 / 징병, 학도병, 정신대 (물) 미곡 공출·배급, 금속제 공출·배급	

2. 1920년대 민족 독립 운동

6·10 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일제의 수탈 정책 - 식민지 차별 교육 - 순종의 죽음	- 민족 독립운동의 혼란 - 임시 정부의 위기 - 중국의 1차 국공 합작	식민지 차별 교육
학생 + 사회주의 + 민족주의	비타협 민족 + 사회주의	학생
조선학생과학연구회 - 학생들의 격문 살포 → 만세 시위	- 조선 민흥회 + 정우회 선언 - 전국 지회, 농민·학생 운동 지원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진상조사단 파견 → 민중 대회 개최 시도	- 광주 학생 사건 → 한·일 학생 충돌 → 일본 경찰의 편파 처리 → 전국 확대 -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
- 학생이 민족 운동 주도 - 민족 + 사회주의 연대 계기	- 해소 → 일제 탄압, 이념 대립 → 코민테른의 지시	3·1 운동 이후 → 최대 민족 운동

[참고] 국외 - 무장 독립운동의 전개 → 시기 구별

1기 1910' S	2기 1920' S	3-1기 1930' S 전반	3-2기 1930' S 후반 이후
준비	본격	한중연합작전	통합 → 분화
독립군 기지 건설 → 독립군 양성	전 - 참 - 재 - 타 - 통 X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 임시 정부·한국광복군

008

IX. 현대 사회의 발전

1.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대상 구별, 시기 구별

1	모스크바 3상 회의	1945. 8. 15 / 미 · 영 · 소 - 임시 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최장 5년의 신탁 통치 반응 - 우익, 즉각적인 독립 → 반탁, 반소 · 반공 운동 좌익, 임시 정부 수립 → 반탁에서 지지로 선회 결과 - 여론은 반탁, 좌우 대립 심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 4 / 참여할 단체의 범위 → 대립, 무기한 휴회 - 미국 모든 단체, 소련 모스크바 3상 회의를 받아들이는 단체만
	정읍발언	1946. 6, 이승만 - 단독 정부 수립 주장 → 한국민주당 지지
	좌우합작 운동	1946. 7 / 여운형 · 김규식 → 중도파 주도 미군정 지원 →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찬성] 김구, 이승만, 여론 / [반대]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 과도 입법위원 구성 → 한국민주당 주도 → 여운형 탈퇴 → 미군정 지지 철회 → 2차 미소공위 결렬 → 여운형 암살 - 한계 - 실세들의 불참, 미군정의 지원 철회
2	UN 상정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 소련, 거부 → 가능한 지역 총선거 (UN 총회,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소총회)
	남북협상	1948. 4 / 김구 · 김규식 - 남북협상 제의 → 남북 지도자 회의(남북연석회의, 평양) → 실패 → 5 · 10 총선거 불참 선언 → 김구 암살(1949. 9)

2. 개헌

제헌	1948	• 대통령 간선제(국회)	4년 중임
1차	1952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국회)	발체개헌, 6 · 25 전쟁 중
2차	1954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개헌
3차	1960	• 의원내각제, 양원제(국회)	4 · 19 직후
4차	1960	• 3 · 15 부정 선거 관리자, 부정 축재자 등 처벌	
5차	1962	•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국회)	
6차	1969	• 대통령 3선 허용	3선 개헌
7차	1972	•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체제, 임기 6년
8차	1980	• 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단임제(7년)	5공화국 헌법
9차	1987	•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5년)	현행 헌법

3. 통일 정책

박정희 정부	[1]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9)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 통일의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남북 조질 위원회 구성, 직통 전화 가설, → 독재 체제 구축에 이용(유신 + 주석제)
노태우 정부	[2]	- 북방 외교 → 유엔 동시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비핵화선언 - 남북 기본 합의서(1991,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상호 불가침, 교류와 협력 실시 시작
김대중 정부	[3]	- 금강산 관광 시작(해로) - 남북 정상 회담, 6 · 15 남북 공동 선언(2000) →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확대),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의선 복구
노무현 정부	[4]	- 금강산 관광 확대(육로 관광 시작), 개성 공단 조성 10 · 4 선언(2007,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백두산 관광, 서해 평화 지대 창설

영 어

이아람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법원직 어법공식21]

공식 #1.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완료] /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 주절의 시제가 현재/현재완료/미래라면 → 과거완료를 제외한 모든 시제가 나올 수 있다!
- 과거 완료는 과거[완료]시제하고만 쓰일 수 있다.
- 시제 일치 예외: 불변의 진리 / 습관 → 무조건 현재
역사적 사실 → 무조건 과거
시간 & 조건(~라면)의 부사절에는 will이 못나온다!
(when과 if는 부사/명사/형용사절 구분필요)

공식 #2 중요필수 / 주요제명(suggest)다음 종속절에 반드시 동사원형/단 suggest,insist는 “제안하다”와 “암시,시사하다”를 구분한다.

- 중필 형용사: Important (= of importance), essential, crucial, vital necessary, imperative
- 주장,요구,제안,명령 동사: insist, maintain, demand, ask, require, request, suggest, advise, recommend, propose, command, order, urge **[S insist that S +(should) 동원]**
- 단 insist, suggest가 사실전달을 뜻 (암시하다/시사하다) 일때는 시제와 수 일치! - 해석하면 “해야한다”가 어색함
The evidence suggested that the man had been killed in the room.

공식 #3 가정법은 주절과 종속절 모양일치 / 도치 / 유사가정법 정리 !

- 과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 과거완료: If you had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Had you tried it, you could have done it.
- 혼합: If they had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Had they started at that time, they would be here now.
- 가정법미래: If I should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Should I see him, I would ask him to call you.
- 불가능한 가정법 미래: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Were I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 유사 가정법은 종속절의 시간부사구를 보고 판단
I wish S 과거 (현재 이러면 좋을텐데)
I wish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 (과거에 이랬으면 좋을텐데)
S V as if S 과거. (현재에 마치 ~ 인 것처럼)
S V as if S had pp + 과거시간부사구. (과거에 마치 ~ 었던 것처럼)

공식 #4 수동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어법문제! 반드시 공식 외운다.

- 수불동사는 무조건 수동태 불가: happen / occur / arise / exist / (dis)appear / consist of / result in / result from / belong to / suffer from / 5감 동사 / remain / seem/ appear / resemble / have / lack / cost / have / let
 - 자 → 수동태 x (단 전치사 있으면 OK - 전치사 + by 연속 나와야 수동태 가능)
 - 타 → 뒤에 N 있으면 → 능동 / 없으면 → 수동 (**단 4/5형식은 예외: give,offer,consider,call)
- I wanted to get yelled at by her for the first time. (법원 17)
We shared a quality book. A quality book was shared by us.
I was given a candy by her. (받았다) He is considered (to be) a genius by us
- 사역동사 /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목적보어가 ① 동사원형이면 → toV로 ② 그 외의 것이면→그대로 !
- She saw him get out of the room. → He was seen to get out of the room by her.
She saw him getting out of the room. → He was seen getting out of the room by her.

공식 #5 2형식/5형식 - 보어의 품사 판별

- 2형식: 감각(look)/판단(seem)/판명(prove)/변화(grow, go, fall, turn, get)/유지(remain) 동사다음엔 형용사 or 명사를 보어로! It became well. (x) → It became good.
- 5형식: 1) 사역(let,have,make)&지각(see*watch*notice*observe, hear, smell, taste, feel)+O.+동원/형/분/명 그 외 5형식 동사 (get/ask/allow/want/advise/force) + toV/형/분
2) 목적보어의 형태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로 (to) V, Ving vs. pp 구분
She had him carry her bags. / She had her bags carried.
She asked him to carry her bags. / She asked her bags (to be) carried by him.

공식 # 6 4형식이 3형식 될 때, 전치사 정리

ask, demand (질문 요구) 직목 of 간목 / buy, do, get, make, cook --> 직목 for 간목
나머지(give, offer, teach, serve, owe) 는 모두 직목 to 간목

공식# 7 병렬 구조 주의할 요소들 (최다빈출)

- A가 더 좋아요: prefer A(N / Ving) to B (N/Ving) / prefer to A rather than (to) B / may as well A(동원) as B(동원) / would rather A (동원) than B(동원)
- 상관접속사 A 와 B 의 품사, 형태 (동명사, toV), 수 일치에 유의
- 나열 했을 때: A, B, and C -->문장 맨 앞으로가서 나열된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무엇인지 찬찬히 따져야 한다. : 밑줄 친 단어 앞이나 뒤에 and가 있으면 /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됨
- toV 가 병렬일 경우 and 다음의 toV는 V만 있어도 어법상 문제 없다. toV and V (o)
- 비교할 때 두 대상이 똑같은지 확인해야함. 단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at of B.
복수명사 of A is 비교급 than those of B.

공식 #8 지문형 어법문제 특화된 수일치

1)상관접속사 주어

both A and B →무조건 복수 / A as well as B or A, not B→ A가 주어 / 나머지는 모두 B가 주어 →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not simply/not just/not merely A but (also) B

2) A of B 형태 1) A lot of / a number of / a great deal of 를 제외하고는 A가 주어 → A의 수에 동사 일치 3)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주어는 3인칭 단수이다.

4) 부분사 주어: A number of 복수명사 + 복수동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 + 단수동사

Many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Many students are good.

Many a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Many a student is good.

부분사(all,most,some,half,분수,% + of +the + N → 동사는 N의 에 따라 달라진다.

All + 가산 명사(복수형) + 복수동사 / All + 불가산 명사(단수형) + 단수동사

one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One of the men is a criminal.

each of the 복수명사 + 단수 동사: Each of them is different.

5) 주어에 수식이 붙은 경우 / 수식어를 제거하고 / 수식당한 명사에 동사의 수를 맞춘다.

[N]+ 전치사구 / to V / 분사구 / 삽입구/ 동격절 / 관계사절 + [V]

6)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 선행사와 수를 일치 시킨다.(선행사가 전치사구인 경우 해석)

7) 도치구문의 수일치는 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에 맞춘다.

There / here + 동사 + 주어. 부정어구 + 동사 + 주어. / 보어강조 도치 + 동사+ 주어

공식 #9 manage+toV vs. mind+Ving , 목적어자리의 toV / Ving구별

To V: 미래지향/선택적: afford, hesitate, pretend, manage,want,wish,decide,expect,plan,offer,fail intend,refuse,seem

Ving: 과거지향/회피적/진행: mind,avoid,deny,quit,enjoy,consider,suggest,recommend,give up,keep, postpone

둘다 가능 1) 뜻차이 없이: 시작,끝,선호여부: start, like, hate 2) 시제 차이: remember, forget

3) 뜻차이 있음: regret, stop, try, mean

Regret to - 유감 vs. regret Ving- 후회 / stop toV-하기 위해 멈추다 vs. stop Ving- 하기를 중단하다

그 외 ving 구문: have difficulty Ving /spend o Ving/ end up Ving / it's no use Ving

공식 # 10 look forward to + Ving! 전치사 to를 구분한다.

look forward to Ving / be used(accustomed) to Ving /contribute to Ving / Object to Ving / be opposed to Ving / Devote oneself to Ving=be devoted to Ving / With a view to Ving /When it comes to Ving / Be equal to Ving / Be exposed to Ving / contribute to Ving / come close to Ving / be subject to Ving

공식 # 11 분사의 형태 = 수동태공식

1) 명사 앞 자리: 능동이면 현재분사 / 수동이면 과거분사 (확률적으로 과거분사 가능성이 높음)

2) 명사 뒤 자리: 자/타 동사 구분과 전치사 유무로 쉽게 구분됨 (수동태 공식과 동일)

★ 뒤에 N → Ving (예외: 수여/call/name/consider)

★ 뒤에 전명구 → pp (예외: 자동사 but 섬에 잘 안나옴)

He saw a student greeting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punished by a teacher. 타

He saw a student coming to a teacher. 자 He saw a student given a prize by a teacher. 수여

He saw a student called Mr. Know All by friends. 5형식

3) 수동태가 될 수 없는 자동사 (e.g., happen)은 pp형태도 될 수 없다 → 분사로 쓸 것이라면, 언제나 Ving !
the accident occurred on the road (x) --> the accident occurring on the road (o)

공식 #12 감정동사는 타동사 / 감정의 원인이 Ving / 감정을 느낀자는 pp

My father was disappointed with I did. My behavior was disappointing.

perplex / bewilder / puzzle / confuse / bore / tire/ satisfy / disappoint / surprise / shock

공식 #13 분사자리 vs. 동사자리 결정은 V-1 = 접속사 공식으로!

• S+분사+ V ~ : The boy **insisting**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 S+관계사+V+ V~: The boy who **insisted** on his staying was ejected by the guardians.

V와 분사 구별 후 → 능동/수동 구분 → 시제구분

● 분사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절과 주어가 같지 않아서 주어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음

- 1) 분사, S + V.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 2) 부사절접속사 + **분사**, S + V. →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구문 (어쨌든 주어없으면 V안됨)

While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 3) 부사절접속사 + S+**V**, S + V → 주어가 있어야 동사가 나올 수 있다.

While he **was insisting** on his staying, he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 4) S1 **분사**, S2 + V → 접속사가 없으면 S V 가 나올 수 없다. (독립분사구문 S1과 S2가 다름)

He **insisting** on his staying, **she**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수동능동 / 시제 구별 해야함]

● 동위접속사 (and/but/or) 앞이나 뒤엔 동사가 와야 함.

S V and (S) V. vs. S V , 분사
단, S V ~ Ving(분사) and Ving(분사) - 병렬구조

● Having pp, S V. → 능동임을 반드시 기억한다. (완료분사, 시제만 주절보다 앞설뿐!)

(Having been) pp, S V. → 수동이다.

● With + 명사+분사: 명사가 분사 하면서 / 명사가 분사하기에 : With + 명사+(being)+형 or 전명구 도 가능!

With the spring coming, it's time to go shopping.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전명구)

He was sitting on the chair with his eyes open. (형)

공식 #. 14 접속사는 완전/불완전 절 / 쓰일 수 있는 위치 / 접속사로 착각하는 전치사

- what/ which / who 다음은 불완전 문장 / 나머지는 완전한 문장
- 의문사 + S + V 어순 (의문사 V S 틀림) He will ask you how old are you. (x)
- 전치사 + that S V (x) / 나머지는 가능
- What vs. that 구별: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vs.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문장: 주어/목적어/보어/전목 중 하나가 없는 것: 이때 실수 하지 않도록 전치사구.부사앞에 반드시 끊기
- whether는 다 되고, if는 동사 다음자리에 if S V 로만 올 수 있다. I wonder if he will pass. (o)
- Because / since vs. Because of / due to / owing to / thanks to/ on account of
While vs. During / for
Although vs. In spite of / despite
by the time vs. by

공식 #. 15 관대불완 vs. 관부완전=전관대완전 / that 앞에 컴마못와 / however 형부주동

-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1) 동사는 있고 2)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 whose는 뒷문장에 관사 없는 주어가 나온다는 점에서 불완전! vs. of which 는 관사까지 나와서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또한 whose는 사람 사물 선행사 모두 가능
- What 관대 앞에는 선행사 못온다. I couldn't get it what he told me. (x)
- that은 전치사 다음에 못 오고 / 컴마 다음에 나올 수 없다. --> 전치사+which or whom / , who or which (o)
- 관계부사 where 다음엔 완전한 문장 / 관계부사 = 전치사+관대 이므로 where = in which
- However 형/부/형명 S V, S V. 아무리 형용사 /부사 할지라도 ~ (형: 보어없음 / 부: 완전절 / 형명 - 주어나 목적어없음)

공식 #. 16 명사의 수,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암기하지 않으면 추론으로 풀 수 없다.

- 무조건 셀 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knowledge evidence proof advice news // stationery jewelry poetry machinery pottery scenery // furniture equipment clothing weather traffic baggage luggage money homework
- 학과, 질병, 게임, 국가 - 단수 Physics / Diabetes / Billiards / The United States is ~ . (o)
- 상호복수: be on good terms with / make friends with / shake hands with / take turns Ving (o)
- 한단단: 한정적 용법의 단위는 단수다
three hundreds soldiers(x) --> three **hundred** soldiers (o) **hundreds of** soldiers (o)
a ten-dollars bill (x) --> a ten-**dollar** bill (o)
the twenty-feet-high buildings (x) --> the twenty-**foot**-high buildings (o)
- many / a number of / not a few / quite a few / few (fewer) + 무조건 복수형 명사
- much / a great amount*deal*quantity of / not a little / quite a little / little (less) + 무조건 단수형 명사
(셀 수 있는지 여부는 명사 뒤에 "s" 있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공식 #17 2개 열거설명: one + the other / 3개 열거설명 one, another, the other!

- 복수이면 ~s / 치정마지막 것이면 the+ / another는 무조건 단수
- Another / other는 한정사와 대명사 둘 다 가능 others는 대명사로만 쓰인다
others students (x) --> other students (o) or others (o)

- 관용표현 - each other: 둘 사이의 서로서로 / one another: 셋 이상의 서로서로
- one after the other: 2 차례로 / one after another: 3 차례로
-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식 #.18 a붙은 형용사는 보어자리에만 올 수 있다.

- 한정형용사는 명사 앞에서만 / 서술형용사는 보어자리에 올 수 있다.
- 서술형용사 (a 로 시작함): alive / asleep / alike / afraid / alone / ashamed / awake / aware /
- 한정형용사: elder

The asleep baby is my nephew. (x) --> The sleeping baby is my nephew. (o)

He was an alone member. → He was a lone member. (o) He let me alone. (o)

공식 #. 19 비교구문: 품사확인 / 병렬구조 확인

- as와 as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 와야 한다. This is as heavier as that. (x)
- 배수사/분수가 as - as 앞 / 비교급 앞 에 올 수 있다. This is three times as heavy as that.
- 라틴어 비교급 (-or) 은 than (x) → to (o) superior to (o)
- The 비교급 S (V), the 비교급 S (V). 항상 이구조로 쓰여야 한다. (형/부/형명 품사 판별도 나올 수 있음)
- 비교급 강조는 FAMES very는 원급강조
-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the가 붙고 / 부사는 안붙는다.
- 비교하는 두 대상은 내용 및 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
- 최상급 of 복수명사 / in 단수명사 =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공식 #. 20 도치가 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둔다.

- 부정부사(구/절) 문두: 단, 부정부사절 일 경우, 주절이 도치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not only, little, only / 전치사+no+명사, only+전치사구 / not+접속사)
- There V S. (단 주어가 대명사이면 도치 하지 않는다) There is a teacher. / There she is.
- 가정법 조건절 if 생략하면 도치 Were I a bird, I would fly to you.
- 보어 강조 → 형/분 + be + S (So) serious was his anxiety (that he lost his health).
- 장소 전치사 + 명사 + V + S On the hill stands the man wearing a hat. (이때는 do동사 안나옴)
- So / neither/ nor +V + S : S도 역시 V 하다/안하다 He lives in Seoul, and so do his parents.
- As +V +S → S도 V 하듯이 Jane goes to church, as do her parents. (해석해야함)
- 형부분명 as S V (도치 아님/형부분명만 앞으로나감) = (Al)though S V 형부분명
- 이때, 형부의 품사 판별도 출제 가능

•

공식 #. 21 대동사: do / 조동사/ be 동사 셋 중에 무엇이 맞는지 - 앞 절에서 확인

- I am happy, and so is he. I can do it, and so can h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nor has my wife.
- I have not drunken for a quarter century, and neither has my wife.
- I studied as hard as he did.

초고빈출 숙어100

1. lead to : 야기하다, ~라는 결과를 낳다, ~에 이르다
2. result in : ~라는 결과를 낳다
3. result from / stem from : ~에서 기인하다, ~로부터 나오다
4. be likely to : ~할 것 같다, ~할 가능성이 있다
be unlikely to : ~할 것 같지 않다, 가능성이 없다
5. have to do with : ~와 관계가 있다
6. contribute to :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7. tend to : ~하는 경향이 있다
8. come to V / get to V : ~하게 되다
9. fail to V : ~하지 못하다 / cannot fail to : 반드시 ~하다
10. play a role[part] (in) : ~에 역할을 하다
11. prevent, stop, keep A from B : A가 B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12. such as : ~와 같은
13. take step[action, measure] : 조치를 취하다
14. the effect of A on B : A가 B에 미치는 영향
15. based on : ~에 바탕을 두고
16. refer to : ~을 나타내다, ~을 가리키다
17. engage in : ~을 하다, ~에 참여하다
18.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 유래하다, 파생되다
19. deal[cope] with : ~에 대처하다, ~을 다루다
20. no[nothing, little] more than : ~에 불과한. ~에 지나지 않는
21. other than : ~을 제외한, ~외에 = aside from, apart from, besides
22. in favor of : ~에 찬성하여, ~를 지지하여, ~에게 유리하게
23. rather than : ~라기 보다는
24. take place : 일어나다, 발생하다
25. not necessarily : 반드시, 꼭 ~한 것은 아니다
26. regardless [irrespective] of : ~에 관계없이
27. at the cost [expense] of : ~을 희생하여, ~의 대가를 치르고 cf) at all costs 무슨 수를 써서라도
28. in terms of : ~의 면에서, ~의 관점에서
29. as a means of : ~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30. be told : 듣다
31. contrary to : ~와 반대로
32. depending (up)on : ~에 따라
33. on one's own : 혼자서, 독립적으로
34. for one's sake : ~을 위해서
35. not to mention : ~는 말할 것도 없고 = let alone
36. serve as : ~로서의 역할을 하다
37. put into action[practice] : 실행하다
38. the last thing[person] : 절대로 ~하지 않을 것[사람]
39. take ~for granted : 당연하게 여기다
40. as opposed to : ~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41. account for : 설명하다
42. have bearing on : 관계가 있다
43. end up : 결국, 끝내는 ~하다
44. in the aftermath[wake] of : ~의 여파로,
45. not A any more than B-B가 아니듯 A도 아니다
46. be in the spot light 주목 받다
47. as well 역시
48.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49. in light of ~라는 건지에서
50. take advantage of 이용해먹다 (나쁘게)
51. be engrossed in 에 몰두하다
52. stick to = cling to 에 들러붙다 고집하다
53. look forward to를 기대하다
54.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 있다
55. aim at 를 목표로 삼다
56. engage in 에 참여하게 되다, 종사하다, 가담하다
57. take part in 참여하다
58. pretend to 인 체하다
59. take steps / measures - 조치를 취하다
60. be occupied with 에 사로 잡히다
61. take charge of를 떠맡다
62.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 부르다.
63. take off - 벗다 / 이륙하다 떨어내다
64. part with 헤어지다
65. exert effects / power / pressure on 에 영향/압력을 행사하다
66. be marked by - 로 특징지어진다.
67. look upon A as B : A를 B라고 여기다.
68. on the excuse that S V : ~라는 핑계로
69. only after S V: ~ 하고 나서야 비로소
70. owing to - 덕분에 때문에
71. by any means: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72. manage to V 용케도/ 그럭저럭 V해나간다
73. opt for 선택하다
74. as of this moment: 지금 이순간
75. as far as - 하는 한 = insofar as
76. no less than - 와 마찬가지로 이다.
77. be better off 처지가 낫다
78. inflict on 고통을 가하다
79. be of no use - 쓸모없다
80. inversely proportional 반비례인
81. be rooted in = be based on
82. give way to - 바꾸다
83. play it safe - 위험을 무릅쓰지 않다
84. make the case that - 를 주장하다
85. to be concise: 간략히 말하면
86. lay down 정하다
87. no less of - 대단한
88. in accordance with - 에 따라서
89. anything but - 결코아닌
90. let go of 보내다
91. as such 그렇게
92. be concerned about 우려하다
93. be informed 듣다
94. be asked to v 하라고 요청받다
95. To illustrate 예를 들면
96. in a nutshell 요약하면
97. pros and cons 단점 장점 / 찬 반
98. A be outweighed by B : B가 A보다 더 중요하다 / 더 무겁다
99. A be outshadowed by B : B에 의해 A의 장점이 가려지다.
100. A offset B : A가 B를 상쇄하다

1	gather	모으다, 얻다
2	punctuate	구두점 찍다, 중단하다
3	skip	거르다, 건너뛰다
4	attract	끌어당기다
5	include	포함하다
6	resume	다시 시작하다
7	assemble	모으다, 집합시키다
8	compensate	보상하다
9	pierce	뚫다, 관통하다
10	sabotage	고의로 방해하다
11	contend	논쟁하다, 주장하다
12	entail	일으키다, 수반하다
13	involve	포함하다
14	incorporate	통합하다, 포함하다
15	resent	분개하다
16	constitute	-으로 여겨지다, 구성하다
17	colonize	식민지로 만들다
18	function	작용하다
19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20	disengage	풀다, 풀리다, 해방하다
21	resist	저항하다
22	emerge	나타나다
23	enhance	강화하다, 높이다
24	be engrossed in	-에 몰두하다
25	outline	윤곽을 그리다
26	inspire	고무하다, 격려하다, 영감을 주다
27	cherish	소중히 하다
28	annoy	짜증나게 하다, 귀찮게 하다
29	breathe	호흡하다
30	tune	가락을 맞추다, 조율하다
31	age	나이가 들다
32	attend	출석하다
33	document	증명하다, 기록하다
34	share	공유하다
35	graze	풀을 뜯게 하다, 방목하다
36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37	complain	불평하다, 항의하다
38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39	withdraw	물러나다, 철수하다, 철회하다
40	deny	부인하다
41	trace	추적하다, 찾아내다
42	intrigue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43	attain	이루다, 성취하다
44	subtract	빼다, 감하다
45	divert	돌리다, 전환하다
46	embed	박다, 끼워 넣다
47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
48	shrink	오그라들다, 움츠리다
49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동일시하다
50	enable	가능하게 하다
51	attempt	시도하다
52	analyze	분석하다, 분해하다
53	shift	옮기다, 이동하다
54	exaggerate	과장하다
55	hesitate	주저하다
56	accompany	동반하다, 동행하다
57	intrude	강요하다, 방해하다
58	mandate	명령하다, 요구하다
59	cast	던지다, 투사하다
60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61	deem	생각하다, 간주하다
62	endow	부여하다
63	shiver	떨다
64	submerge	물속에 잠그다
65	renew	갱신 시키다
66	sprout	싹이 트다, 발아하다
67	nurture	육성하다, 양육하다
68	distort	왜곡하다
69	reinforce	강화하다, 보강하다
70	merge	합병하다, 융합되다
71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72	yield	생산하다, 항복하다, 넘겨주다
73	equilibrate	평행하게 하다
74	indulge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75	prevail	널리 보급되다, 유행하다
76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 있다

77	dilute	묽게 하다, 희석하다
78	mirror	반사하다, 반영시키다
79	penalize	벌을 주다
80	detect	발견하다, 간파하다
81	roast	굽다, 익히다
82	vary	변화를 주다, 다양화하다
83	barter	물물교환하다
84	classify	분류하다
85	terrify	겁나게 하다, 놀래다
86	liken	비유하다, 견주다
87	empower	권한을 주다
88	resort	의지하다, 호소하다
89	exert	발휘하다, 행사하다
90	bankrupt	파산시키다
91	coordinate	조정하다, 조화시키다
92	rust	부식하다, 녹슬다
93	dismiss	묵살하다, 해고하다
94	omit	빼다, 빠뜨리다, 생략하다
95	perform	공연하다
96	navigate	길을 찾다, 항해하다
97	trigger	유발하다, 일으키다
98	extend	연장하다
99	look forward to N	-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100	dominate	지배하다, 통치하다
101	uphold	떠받치다, 올리다
102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103	take A for granted	-를 당연시하다
104	refute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105	put off	연기하다
106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107	ease	덜다, 완화하다
108	stick to	고집하다, 충실하다
109	dread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110	interfere	간섭하다, 방해하다
111	besiege	포위공격하다, -을 에워싸다
112	be charged with	-로가득채워지다, -에 책임을 맡고 있다
113	absorb	흡수하다
114	account for	설명하다, 차지하다

115	offend	기분 상하게 하다
116	flush	붉어지다, 홍조를 띠다
117	execute	실행하다, 실시하다
118	underpin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119	fulfill	이행하다, 완수하다, 채우다
120	dwindle	줄다, 작아지다
121	evaluate	평가하다
122	starve	굶주리다, 굶어 죽다
123	anticipate	예상하다
124	indicate	나타내다, 가리키다
125	bury	묻다, 덮다
126	diminish	감소시키다
127	determine	결정하다
128	mimic	흉내내다
129	paralyze	마비시키다
130	guarantee	보장하다
131	substitute	대신하다, 대치되다
132	stem	생기다, 유래하다
133	recruit	모집하다
134	urge	재촉하다, 강요하다
135	aim	겨누다, 목표 삼다
136	witness	목격하다
137	motivate	동기를 주다, 자극하다
138	interpret	해석하다
139	experiment	실험하다
140	advocate	옹호/지지하다
141	allocate	할당하다
142	applaud	박수치다, 성원하다
143	bet	걸다, 주장하다
144	bite	물다, 물어뜯다
145	linger	오래 머무르다
146	trade	장사하다, 매매하다
147	be due to	-할 예정이다
148	insult	모욕하다
149	engage in	-에 종사하다, -에 참여하게 하다
150	take part in	참여하다
151	rejoice	크게 기뻐하다
152	swell	부풀다

153	reveal	드러내다, 알리다
154	ensure	보장하다
155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156	take A into account	고려하다
157	detract	줄이다, 손상시키다
158	restrict	제한하다, 한정하다
159	reproduce	번식하다, 재생하다, 복사하다
160	polish	닦다, 윤을 내다
161	convert	전환하다, 바꾸다
162	assign	할당하다
163	backfire	맞불놓다, 역효과를 낳다
164	neglect	방치하다, 소홀히 하다
165	distinguish	구별하다
166	upset	속상하게 하다
167	define	정의하다
168	measure	재다, 측정하다
169	parent	아이를 기르다
170	surpass	능가하다
171	pretend to	-인 체하다
172	rot	썩다, 부패하다
173	vomit	토하게, 비우다
174	advance	증진되다, 발전하다
175	dissolve	녹이다, 용해시키다
176	affirm	확인하다, 확인하다
177	falsify	위조하다
178	disregard	무시하다
179	retrain	제지하다, 억제하다
180	process	처리하다
181	become acquainted with	-와 알게 되다
182	locate	위치를 정하다, 찾아내다
183	overlap	겹치다, 겹쳐지다
184	stiffen	뻣뻣하게 하다
185	emit	방출하다, 말하다
186	distract	산만 하게하다
187	discern	분별하다, 식별하다
188	matter	중요하다
189	compensate	보상하다
190	stretch	뻗치다, 늘이다

191	alternate	번갈아일어나다, 교체하다
192	solve	해결하다
193	arrange	배열하다, 정리하다
194	split	쪼개다
195	sow	뿌리다
196	devastate	황폐화 하다
197	scratch	할퀴다, 긁다
198	overvalue	과대평가하다
199	mature	성숙하다
200	ventilate	환기하다
201	be occupied with	-에 사로잡히다
202	perceive	인식하다, 이해하다
203	justify	정당화하다
204	relieve	없애주다, 완화시키다
205	calm	진정시키다, 달래다
206	adapt	맞추다, 적응하다, 각색하다
207	facilitate	촉진하다, 쉽게 하다
208	infer	추리하다, 뜻하다, 암시하다
209	probe	캐묻다, 조사하다
210	grant	주다, 승인하다
211	creep	기다, 움직이다
212	vend	팔다, 자동 판매기로 팔다
213	stimulate	자극하다
214	incur	초래하다
215	tolerate	참다, 견디다
216	infect	감염시키다
217	qualify	자격을 주다, 한정하다
218	mind	신경 쓰다, 꺼리다
219	eliminate	제거하다, 배제하다
220	derive	끌어내다, 얻다, -에서 비롯되다
221	rip	쪼개다, 찢다, 찢다
222	suppress	억압하다, 억누르다
223	approximate	-에 가까워지다
224	supervise	관리하다, 감독하다
225	pursue	뒤쫓다, 추구하다
226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
227	respect	존경하다, 준수하다
228	intervene	개입하다
229	swallow	삼키다

230	deserve	-할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
231	bury	숨기다, 묻다
232	conform	적합하게 하다, 순응하다
233	oblige	강요하다
234	loom	어렴풋이 보이다
235	assert	단언하다, 주장하다
236	grind	갈다, 연마하다
237	contribute	-의 원인이 되다, 기여하다
238	impair	손상하다, 해치다
239	coincide	일치하다, -에 상당하다
240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241	inherit	물려받다
242	induce	설득하다, 유도하다
243	install	설치하다, 설비하다
244	simplify	단순화하다
245	provoke	일으키다
246	regress	되돌아가다, 퇴보하다
247	organize	조직하다
248	contract	걸리다, 수축하다
249	inhibit	금지하다, 방해하다
250	release	풀어놓다, 방출하다
251	wander	거닐다, 헤매이다
252	insulate	절연처리를 하다
253	flutter	휙휙 날다, 날개치다
254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255	combine	결합시키다
256	shape	형성하다, 모양 짓다
257	confirm	확인하다
258	confuse	혼란 시키다, 혼동하다
259	nibble	조금씩 물어뜯다
260	distribute	분배하다
261	tackle	처리하다, 다루다
262	compile	편집하다, 수집하다
263	resolve	풀다, 해결하다
264	exceed	넘다, 초과하다
265	consult	의견을 듣다, 진찰을 받다
266	appreciate	평가하다,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267	corrupt	타락시키다, 부패 시키다

268	lament	슬퍼하다, 비탄하다
269	maintain	유지하다
270	expel	쫓아내다, 추방하다
271	expand	넓히다, 확장하다
272	demand	요구하다
273	take charge of	떠맡다
274	halt	멈추게 하다
275	launch	시작하다, 출시하다, 발사하다
276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
277	plague	애타우다, 괴롭히다
278	obscure	보기어렵게하다, 모호하게 하다
279	mediate	조정하다
280	seek	구하다, 추구하다, 찾다
281	simulate	모의실험 하다
282	desire	바라다, 원하다
283	concentrate	집중하다, 농축하다
284	lack	-이 없다, 부족하다
285	migrate	이주하다, 이동하다
286	refer to	언급하다, 말하다
287	float	뜨다, 떠다니다
288	veil	베일로 가리다, 덮다
289	furnish	공급하다, 설비하다
290	evolve	발전하다, 진화하다
291	transmit	보내다, 발송하다
292	foster	조장하다, 촉진하다
293	curb	억제하다, 제한하다
294	undermine	약화시키다
295	possess	소유하다, 보유하다
296	close	닫다, 가까운, 밀접한
297	peel	껍질을 벗기다
298	sigh	한숨 쉬다
299	respect	존경하다, 준수하다
300	adjust	맞추다, 조정하다

형 법

박지용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대법원 2013. 4. 11. 2010도1388

2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이 매수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

X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시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그 범죄내용이 전매인의 위 아파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효력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매당시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관한 사실을 전매인이 알았더라도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위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매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매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83. 9. 13. 83도823

3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위 차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대판 1990. 11. 9. 90다카8760

4 甲이 피해자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경우 甲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B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얻었더라도 특수제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X 피고인은 피해자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제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을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 11. 16. 2023도11885

5 甲은 A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A의 모(母) B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B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甲이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B가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 대판 2011. 5. 13. 2010도9962

6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A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매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A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매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024. 8. 1. 2021도2084

7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인 집단범의 경우 각 가담자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범정형이 부과된다. []

X 내란죄의 경우 집합범이지만 범정형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자신의 과실이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X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7도1740).

9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10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등개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므로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

X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차액만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22. 12. 29. 2022도8592

13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

15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고 중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초
 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16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X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

- 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4. 11. 14. 2024도13000
- 17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및 보존,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甲이 ○○축협 조합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돈을 ○○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F조합이 이 사건 위원회에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조합이 취득한 자금운용의 기회가 곧바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2. 8. 25. 2022도3717
- 18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5. 28. 2014도18006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이사 甲이 건설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위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받은 것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역계약 상대방인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9585
- 20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는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판 2016.6.23. 2016도3753).
-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교분이라고 명백히 인정된다면 직무관련성은 부정된다.
- 21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22. 5. 12. 2021도16876
- 22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은닉행위를 통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2021.1.14. 2020도14735
- 23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0. 9. 24. 2020도9801
- 24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진다.
- X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21.7.15. 2018도11349).
- 25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X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23.5.18., 2023도3549)

26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X 제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27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X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21.5.27., 2020도15529).

O 대법원 2024.7.25., 2023도16951

28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O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29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제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O 대판 2015.7.23., 2015도3080

30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대판 1984.2.28, 83도2783).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8.10.9. 2008도6944).

31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곧바로 돌아가자면 어린이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4.9.27., 2023도17996)

32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거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피고인들이 A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판 2017.6.15., 2016도8557)

33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 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X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4.5. 9, 2024도2879)

34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

을 폭로하겠다는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35 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 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

36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O 대판 2023.12.14., 2023도9350

37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O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24.3.12., 2023도9571

38 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甲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甲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甲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甲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2024.2.8., 2023도16595

39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21.11.25., 2016도3452).

40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 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O 언론인(언론사 논설주간)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 내지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판 2024.3.12., 2020도1263

4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X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대판 2024.1.4., 2023도1178).

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대판 2023.3.16. 2022도15319).

43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어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X 직무유기죄는 ...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44 개별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X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09.4.23. 2008도11921).

45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7. 1. 25. 2016도18941

46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X 관련판례 1.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판 2018.5.11. 2018도2844). 관련판례 2.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7.24. 2013도16101).

47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판 2008.5.29. 2007도5037).

48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민사집행법상 기일입찰 방식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전체적으로 경매절차를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21. 2023도10254 판결

49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50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4. 11. 8. 94도2142

51 범인이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이 체포되거나 발견되는 데 장애를 준 경우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O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6도1016).

52 甲이 乙로부터 “사기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지 않고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들이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의 범행을 범하고 1992.11.19. 미국으로 도주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범인도피의 각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2가 1992.12.9. 15:00경 공소외 B로부터 A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가명으로 예금하여 두었다는 점은, 위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3. 93도3080

53 A가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甲이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O 대판 2004.3.26. 2003도8226

54 폭행용의자 A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甲이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X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1059

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2024년~2025년 중요최신판례 모음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회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회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X)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X)

3.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정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X)

4.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O , X)

5. 재판기록의 공개 가능성은 재판의 공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 등이 공개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그 소송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의 공개제한사유로서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O , X)

6.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O , X)

7.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O , X)

8.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대리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준용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않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서도 고소 및 고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대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9.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O , X)

1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도 여기에서의 '청취'에 포함된다.

.....(O , X)

1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X)

12.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판단이나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 X)

13.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X)

1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만 기록되어 있고 별도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X)

15.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 X)

16.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그 영장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도 있다.

.....(○ , X)

17.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私人)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처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X)

18.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한 참여자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수사기관이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포함하여 압수·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와 참여자의 객관적 능력에 관한 법률적·사후적인 판단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 , X)

19.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위법하며,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 X)

20. 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 피의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만일 이 경우 참여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능력이 있는 이웃 등을 함께 참여시켜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 X)

2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도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나, 다만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O , X)
22. 압수물에 대한 물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O , X)
2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O , X)
24.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는 그 임의성으로 인하여 달리 보아야 한다.
.....(O , X)
25.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에도 그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O , X)
2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X)
27.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는 피고인이 목적으로 하거나 인식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공소사실에 ‘범죄’에 관하여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X)
28.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O , X)
29.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원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도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이 있다.
.....(O , X)
30.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O , X)
31.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다면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X)
32.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O , X)
33.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34.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전파가능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3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 X)
36.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O , X)
37.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O , X)
38.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 , X)
39.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피의자가 당해사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 X)
40.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O , X)
41.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42.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O , X)
43.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O , X)
44.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그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 X)
45.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룰 수 있다.
.....(O , X)
46.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O , X)
4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O , X)

48.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54조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시기를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한 취하의 시기 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X)

49. 재심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하는 진술 자체가 재심이유인 ‘직무에 관한 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여 확정판결로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도, 재심청구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만으로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그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O , X)

50.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사실조사는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

.....(O , X)

5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유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O , X)

52.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O , X)

민 법

이준현 교수(박문각 대표교수)

2024년~2025년 중요최신판례 모음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판 2024.1.4., 2023다263537).
2.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6.27., 2023다254984).
3.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2024.11.28., 2023다245287).
4. 공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없다(대판 2024.3.12., 2023다301712).
5.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얻을 이익이 이로 인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 불이익의 발생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생각으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급박한 곤궁 상태에 이르렀다면, 공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24.3.12., 2023다301712).
6.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4.6.17., 2020다291531).
7.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대판 2024.8.1., 2024다206760).
8.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과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대판 2024.1.4., 2023다225580).
9.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판 2024.1.4., 2023다225580).
10.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24.7.11., 2024다211762).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진하였다면 추진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10.31., 2024다255328).
12.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7.18., 2018스724).
13.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금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판 2024.9.27., 2024다249729).
14.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15.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2024.3.28., 2023다265700).
16.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17.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판 2024.10.31., 2024다232523).
18.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3.28., 2023다265700).
19.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대판 2024.10.31., 2024다232523).
20.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24.2.15., 2019다208724).
21.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24.12.24., 2020다275744).
22.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2024.3.12., 2023다240879).
23.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대판 2024.11.14., 2023다311160).
24.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대판 2024.3.12., 2023다240879).
25.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대판 2024.10.31., 2024다202317).
26.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24.11.14., 2024다268997).
27.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설정자이다(대판 2024.4.12., 2023다315155).
28.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게 된다(대법원 2024.8.19., 2024마6339).
29.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8.19., 2024마6339).
30.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24.11.14., 2023다272289).
31.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가 적용된다(대판 2024.2.15., 2019다238640).

32.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판 2024.7.25., 2021다239905).
33.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24.6.20., 2021다299594).
3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24.3.12., 2023다301682).
35.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24.2.15., 2019다238640).
36.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판 2024.3.12., 2019다223303).
37.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고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대판 2024.10.25., 2024다252305).
38.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대판 2024.10.25., 2024다252305).
39.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24.10.8., 2024다258921).
40.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대판 2024.3.12., 2019다29013).
41.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24.7.31., 2023다266420).
42.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대판 2024.8.1., 2024다227699).
43.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24.5.30., 2019다47387).
44.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지만,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대판 2024.8.1., 2024다227699).
45.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외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판 2024.8.1., 2024다204696).
46.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8.1., 2024다204696).

47.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4.12.12., 2024다261989).
48.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24.1.4., 2022다256624).
49.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대판 2024.9.13., 2024다256116).
50.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대판 2024.4.12., 2023다309020).
5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24.1.11., 2023다258672).
52.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대판 2024.6.13., 2024다215542).
53.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목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고 그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대판 2024.6.27., 2023다307024).
54.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4.9.12., 2024다239364).
55.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판 2024.2.29., 2023다294470).
56.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4.6.27., 2022다302022).
57.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판 2024.9.27., 2024다224645).
58.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4.2.15., 2023다272883).
59.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대판 2024.2.15., 2023다272883).
60.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대판 2024.10.8., 2024다257362).
61.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다(대판 2024.10.8., 2024다257362).

62.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6.27., 2023므16678).
6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된다(대판 2024.2.15., 2019다208724).
64.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5.23., 2020므15896).
6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4.5.30., 2024므10370).
66.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0.25., 2024므11526).
67.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4., 2022므11027).
6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6.13., 2024스536).
69.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2.8., 2021므13279).
70.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며,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24.7.11., 2023다301941).
71.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24.8.1., 2023다318857).
72.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판 2024.8.1., 2023다318857).
73.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024.4.25. 2020헌가4).
74.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내용을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024.4.25. 2020헌가4).

민사소송법

이영민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3.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4.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5. 민사소송법 제30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7.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8.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그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9.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10.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1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12.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13.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4.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15.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1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17.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18.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19.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0. 비법인 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1.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2.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3.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4.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5. 소장에 첨부한 부족인지의 가첩에 관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부족인지액의 가첩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본법 제446조에 따른 재판의 경정을 할 수 없다.
26.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28.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9.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32.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3. 소의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4.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5.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36.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7. 별소로 계속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8. 중복제소금지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
39.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0.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41.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42.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3. 원고가 상환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4.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용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45.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6.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7.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나 권원 등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 즉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48. 토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지상물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 이 경우에 법원으로서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피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9.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50.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준비기일에서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1. 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4조 및 제179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53. 항소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54.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55.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6.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57.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8.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9.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60.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61.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63.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툼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64.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65.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66.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다.
67.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68.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69.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0.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71.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72.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498조), 부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부적법한 상소를 각하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상소 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73.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75.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6.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램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77.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78.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79.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80.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1.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82.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 청구는 ...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83.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을 청구변경의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보호는 보장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84.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85.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86.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87.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88. 공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8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90.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91.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92.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93.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
94.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95.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96.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의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97.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98. 제1심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99.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 민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01.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인정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2. 소송계속중에 소송목적의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하는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그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그 신청을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한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03.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04.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05.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106. ...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107.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108.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109. 항소인이 항소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0.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11.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12.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13.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114.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115.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16.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 청구들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17.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118.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19.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20.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121.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상 법

이상수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 수험생 여러분은 열과 성을 다하여 충분히 공부하였고, 시험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공부가 되어진 내용이겠지만, 짚을 내는 시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보고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총칙)

1.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개인상인의 상인자격은 개업준비행위를 상대방이 인식한 때로부터 인정된다.
3. 변호사, 법무사, 의사, 세무사 등 자유직업인의 상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공동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수동대리행위는 공동지배인 중 1인에게 하더라도 유효하다.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7.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8.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목적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줄 의도를 말한다.
9.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지역내에서 동종영업목적으로 다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는 동일상호에 한정된다.
10. 상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권자인 국가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불실등기를 믿고 취득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12. 이사의 선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사실상의 추정력)
1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14. 상호의 양도 또는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라거나 상호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
15.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16. 상법 제42조 제1항에 있어서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은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7.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며,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된다.
18. 개인상인이 영업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설립된 회사가 개인상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
19. 주식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에 영업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20. 영영용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른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상행위)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4.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나 쌍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 및 그 행위의 변형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 불법행위, 근로자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수량이 지정된 부대채물의 매매나 부동산임대차, 권리하자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상법 제69조에 따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월내에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나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9. 당사자간에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라 할 수 없다.
10.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11.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 또는 하주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인정된다.
13. 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교부한 때에는 자기가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면책약정은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5. 화물상환증이 교부된 때에도 가인도나 보증도가 인정된다(상관습법).
16.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17.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18. 금융리스는 물건의 구입 또는 대여를 위한 자금의 융통을 본질로 한다.
19.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수령한 것이 증명된다면 금융리스업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0.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법)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채무면탈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사록이 작성되어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실질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선임시 보수결정을 관행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1인주주인 대표이사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인정된다.
6.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7.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8.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9.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자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0.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1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월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12.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13.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14.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15.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7.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18.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19.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
20.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1.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23.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4. 공동대표이사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 사임이사나 상업사용인의 대표행위,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리행사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25.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고, 이사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로 될 수 없다.
26.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7.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봄이 상당하다.
29.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0.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31. 직무대행자의 선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대표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32.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3.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34.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5.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36.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 그 무효의 소제기기간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37.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38.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39.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4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다.
41. 휴면회사의 청산이 의제된 이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42.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43.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실질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4.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는 모바일메신저나 휴대전화문자도 포함된다.
46. 주식의 입질이 있는 경우 주주권은 질권설정자가 행사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47.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의 지배주주의 주식수(100분의95이상)에는 모회사의 주식뿐만아니라 자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48. 상법 제401조의2의 배후이사(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49. 감사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7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0.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1인과 유한책임사원1인인 경우, 제명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원의 임의퇴사는 인정된다.
51.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상실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총사원의 동의로도 가능하다.
52. 합명회사의 청산중 사원의 퇴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원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53. 유한회사의 자본금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
54.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55. 주식회사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위법배당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56. 신주발행의 경우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7.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확정일자있는 양도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항).
58.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개별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59.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현실적 점유 이전 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간이인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60.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명의개서청구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교수(박문각 전임교수)

1. [전세권변경, 근저당권변경 등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따른 등기실행방법]

- ① 원칙 : **부기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
- ② 예외 : **수리요건** (승낙o : 부기등기 / 승낙x : 주등기라도 수리x)
(예외가 되기 위한 설문의 단어 : “터잡은, ~목적, ~에, ~부”).

2. [등기대상]

- ① 가능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10년이상 규정 : 예시적에 불과), 벽이 없는 개방형축사, 실내테니스장**
- ② 불가능 : **연결통로, 하천(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벽이 없는 버섯재배사, 해수면 위~**

3.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등기목적의 동일] : 등기할 사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이 동일한 경우

- 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나머지는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머지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A 부동산은 전부, B 부동산은 일부 1/2을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등기원인의 동일] :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당사자·원인일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 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는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나 판결문 등에 기록된 각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와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일]

- ①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동일한 등기의무자로부터 여러 동일한 등기권리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여러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여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에서 **일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에게 표시변경(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의 표시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7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부동산은**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A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이 등기의무자·을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B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이 등기의무자·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⑥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성명(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여러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용범위]

- 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법 제7조의2에 따라** 관련 신청사건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합병·사인증여·규칙 제42조에 따른 등기는 법 제7조의3에 따라** 등기신청 할 수 없으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관련 신청사건은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

[신청절차 및 실행절차]

- ① 관련 신청사건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되, **신청정보**를 작성할 때 “**법 제7조의2에 의한 신청**”임을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접수된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정 및 취하는 그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취할 수 있지만 **일부 취하에 의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취하를 할 수 없으며 신청 전부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일부 부동산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해당 등기신청을 제외하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사건 전부에 대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이유와 함께 **다른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 29조 제1호에 의해 각하하는 것으로** 각하결정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하며,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 ⑥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리한 등기소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4.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하는바,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6.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7.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등기관은 직무권한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지만,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며, 등기소장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9.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없다면 신청정보와 위임장 및 확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첨부정보는 열람할 수 없다.**
 10.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1. 법원의 **신탁종료명령**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종료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12.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반응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㉔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서 / 재단법인 주무관청허가서 / 공익법인 소유권이전 주무관청허가서**)
 14.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가전등기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서**로 접수하나,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무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동시에 신청하되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관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7.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상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18.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 **중앙관서가 아니므로**,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소유자 국’ ‘관리청 (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19. 신청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21.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22.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23.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일 필요는 없다.
24.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계속적/일시적)체류국 재외공관o / 거주국 공증인x]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5.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재외공관의 공증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6.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7.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8.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9. 외국인인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국내 공증인x)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취할수도 있다.
30.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인 경우에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한 경우 그 증명이나 인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과 같이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 그 인증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아니다.
31.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미국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기관은 그 인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3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35.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서는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바, 정관 기타 규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다.
36.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7.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사원총회 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2인 이상의 성년자는 반드시 결의서 작성 당시에 날인한 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3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표시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채무자로 되는 경우 등기기록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9.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이 가등기상의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관계없이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0.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4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축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 전에 그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그 말소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 원인이 합병 등기 후에 발생하였으면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3. 제출 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 및 보정, 취하서 제출, 등기필정보 수령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44.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와달리,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채권이나 금전채권이나 모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46.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㉔ 번호x).
47. 등기관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㉔ 상대방대리),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㉔ 쌍방대리). 다만,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48.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9.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는 검인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0. 협의분할(조정분할, 심판분할 포함)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에 해당되므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51. 등기관이 2006. 1. 1. 후(전x)에 작성된 매매계약서(판결서x)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x)를 신청하는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2. 종중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53. 농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54. 합유자의 교체·추가·임의탈퇴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5.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상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가 완료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가 또다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 경우에도 신탁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이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5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신탁종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이고 신탁재산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57.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58.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59.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다.
60. 승소한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6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62.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63.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 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64.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전건)와 매수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후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후건에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전건과 후건이 이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전건에서 통지받은 매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건의 접수증 등으로 이를 감할 수는 없다.

65. 근저당권이전등기(또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다른 방법(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67.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68.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 정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 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69. 자필서명은 자격자대리인이 하단에 본인 고유의 필체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자필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70.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71.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2.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73. 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인의 원본 환부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계약서(매매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② 수용(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③ 판결(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규약 또는 공정증서)
 ⑤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7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75.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7호나 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6.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㉔ 공유인 뜻×, 합유지분×).
77.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정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7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79.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80.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
8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82.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83. 각하사유를 간과하여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각하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4.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창설적 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甲 토지의 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乙 토지의 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5.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추가적 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두 토지가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있는 경우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86.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도로명주소×)**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이 있다.
87. 법원의 **추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88. **부채식등기부**에서 **카드식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이기되고 그 등기사항이 전산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전산등기부**에 이기된 사항을 **경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89. **권리자체의 경정(지당권 → 전세권, 권리자 전체의 경정(甲 → 乙), 법인을 비법인으로 하는 경정,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90.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91.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㉔ 수리요건).
9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93. **甲 - 乙 -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현재의 소유명의인 **丙은** 그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94.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병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명의인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갑이 병의 **승낙**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95.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96.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이유로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위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은 그 말소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위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97. **甲에서 乙에게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98.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말소당시의 소유자(종전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고, **현재의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99.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100.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1. ① 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거나 “국”으로부터 이전등록된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기재가 (일부)누락되어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승소한 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토지의 대장이 아니라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이므로,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이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02. **개방형 측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측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

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3.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4.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05.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06.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㉔ **소유권이전x**).
107.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특정일자"가 아닌 "**기간(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일자로 특정하여도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 등기관은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속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08.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㉔ 접수증명x)을 제출하여야 한다.
109. (㉔ 현물분할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없이**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막바로 할 수 있다.
110.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①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없지만, ②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111.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분할**이 가능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마쳐진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12.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협약이 성립한 날**로 한다.
113. **협의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재협의**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 재협의분할, 재협약이 성립한 날)와 **새로운 상속등기**(단독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하여야 한다.
114. 그러나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115.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사망**(법정상속인 병, 정)하여 **병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려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 병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 정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자는 을의 원래의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병**이라 할 것이다.
11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117.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하고 **A의 상속인(a')**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a')**은 X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A를 거쳐 **본위상속**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결국 **A의 상속인(a')**은 **X를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X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는 '**X의 나머지 상속인들(B,C)**'과 '**상속포기자(a')**를 제외한 **나머지 A의 상속인들(a'',a''')**(A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혹은 '**A의 후순위 상속인들(A의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이라 할 것이다.
118.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9.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경매신청 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120.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 을, 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 순차적으로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미 **을과 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권리자를 **갑, 을, 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이므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121. 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1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관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4.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25. 그러나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126.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

127.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을, 병**)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을, 병, 정, 유증자 망 갑의 유언집행자 을, 병”**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128.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 또는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9. **갑이 을**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병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병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갑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을**을 등기관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0. **공정증서**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특정유증**한 후에 **유증자 명의로 위 구분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여 위 구분건물이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 자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1. 유언증서에 “본인의 유고 시 자산은 ○○○에게 모두 귀속됩니다.” 라고만 기재하고 **별도로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2.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관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관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사인증여계약서** 등)에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를 **준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다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4.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

135.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36.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37.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38. ○○시장이 비록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서에 사업시행자가 “○○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도”로 할 수는 없으며, “○○시”로 하여야 한다.
139. 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로 기재되어 있는 재결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 등기원인일은 ‘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140.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 등을 ‘수용’하였음이 주문에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재결서 주문에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한 후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14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142.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43.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44. 구분지상권에 있어서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45. 「도시철도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하수도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146.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47.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148.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49.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0. 도시철도법, 도로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151.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일괄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역권설정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152.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153. 지역권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승역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액은 요역지의 시가표준액이 된다. 또한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54. 법인이 전세권자인 경우 권리자에 관한 사항에 취급지점을 기록할 수는 없다.
155. 공동전세권자 甲, 乙, 丙, 丁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甲, 乙, 丙, 丁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56.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5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이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보다 전일이라면, 기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과 임차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되려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158.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159.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160.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각 부동산별·채권자별·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161.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62.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변경계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할 수는 없다.
163. 원칙적으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면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64.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단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제공할 수는 없다.
16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6.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정보는 추가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다.
167.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서등을 첨부하여도 공장저당권을 할 수 없다.
168. '갑과 을'이 공유하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전부와 그 토지에 설치된 '갑'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및 그 토지 전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을'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69. 공장저당의 설정등기를 한 후에 기계·기구의 추가나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로 종전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목록기재변경등기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70.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1. 2012. 11. 15.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1. 15. 가등기 권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2023. 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11. 15.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3. 11. 15.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23. 7.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3. 11. 15. 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위 일자가 계약일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상, 등기관이 매매예약일인 2012. 11. 15.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17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으로 가등기를 하여야 하며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말소도 통상의 말소절차(㉔ 등기신청)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173.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74.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x).
1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 ② 가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6. 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말소여부를 결정하며,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177.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전세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8.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㉔ 모든)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할 수 없다.
179.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당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4조),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2020. 8. 5.)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80.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o
 ②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 o
 ③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x
 ④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 : x
18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o
 ②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 o
 ③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 : o
 ④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o
182.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183.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취득세)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4.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목적에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위탁자의 동의를 있더라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85. 신탁등기의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으로 인한 권리가전등기를 한 다음 등기목적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재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186.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187. 등기관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88. 공동위탁자(甲, 乙) 중 1인(乙)을 단독수탁자, 甲과 乙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甲지분에 대하여는 “甲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乙지분에 대하여는 “乙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89.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190.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성명(명칭)과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아직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1.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상권이전등기x)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다만 수탁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9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193.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목적관부터** 횡선을 그어 “**등기목적관**”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을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관**”에는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94.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195. **담보권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㉔)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6.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197.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파산법상의 **보전처분**의 등기를 할 수 있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가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신청) 할 수 있다**.
198.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99. **희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다른 희생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0.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희생계획인가**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희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1. **환지계획인가의 고시(환지처분공고)**이 있는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으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만약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202. **이전고시가 있는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는데**, 만약 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203. **근저당권이 새로운 건물과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및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므로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는다(자동이기x)**.
204.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직권x)**로 하여야 하므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05.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상의 등기명의인과 **첨부정보**인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2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첨부정보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207. 위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5년대비 법원(등기)사무직 시험대비

합격 설명회

- ▶ 설명회 일자 : 2024년 6월 28일(토) 14시
- ▶ 설명회 내용 : 1) 채움팀 연간 커리큘럼 및 과목별 학습 방향
2) 법원·등기 단기합격 노하우
3) 25년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
- ▶ 설명회 장소 : 박문각 씨밋 303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일까지 빈틈 없이 채워주는
법원/등기직 연간 커리큘럼

2025년								202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법 입문특강	기본 이론			심화 이론				FINAL					
								기출 실전 문제 풀이		핵심 이론 요약		전범위 모의고사 + 중요지문 OX특강	

박문각 이준현 채움팀만의 '3M 관리반' 프로그램



채움 관리반은 합격반 수강생 중 테스트를 통해 **별도 선발**합니다.

채움 3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생활 관리	상담 관리
- 진단 평가 실시 - 스케줄러(플래너) 작성 - 모의고사 성적 관리 - 질문/답변의 정례화	- 출결 시스템을 통한 출결 관리 : 07:30까지 등원 - 야간 강제 자습 실시 : 19:00~22:30 엄격한 운영규칙/출결관리	- 담임 교수 상담 - 상담 카드 작성 - 상담의 정례화

법원·등기직 연간반

얼리버드 수강 이벤트

선착순
50명!

이벤트 기간 : 2025.06.02(월)~06.28(토)

차원이 다른 탄탄한 합격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수험에 꼭 필요한 필수 혜택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수강신청 시 혜택 전원 제공

10% OFF

신규 수험생
10% 추가 할인

15% OFF

타사 환승
15% 추가 할인

20% OFF

재수강
20% 추가 할인



개인
사물함 제공



전용
자습실 제공



복습
동영상 제공

12개월

8과목

법원직 연간반

6,360,000원 → 40% 할인 3,816,000원

신규생
10%
추가할인

3,434,000원

수강신청

12개월

8과목

등기직 연간반

6,360,000원 → 40% 할인 3,816,000원

신규생
10%
추가할인

3,434,000원

수강신청